

# 경찰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 향상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 경찰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 향상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정책기획연구실  
연구관 권태형

# 목 차

<b>일러두기</b> .....	<b>1</b>
<b>제1장 서론</b> .....	<b>2</b>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	2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5
<b>제2장 경찰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b> .....	<b>6</b>
제1절 개인정보 보호 개요 .....	7
1. 개인정보 보호의 의미 .....	7
2. 개인정보의 개념과 유형 .....	9
제2절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내용 .....	18
1. 개인정보 보호 법제현황 .....	18
2. 개인정보 보호법 구성 .....	21
3. 개인정보 보호법상 용어 .....	24
4.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파기 .....	27
5.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제한 .....	40
6. 영상정보처리기기 .....	44
8.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	72
9. 정보주체의 권리 .....	76
10. 보칙 .....	79
<b>제3장 경찰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현황</b> .....	<b>87</b>
제1절 개인정보 보호 활동 .....	87

1. 개인정보 보호 규칙·매뉴얼 .....	87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 현황 .....	90
3.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현황 .....	98
4. 개인정보 보호 점검 결과 .....	99
제2절 경찰의 개인정보 유출 .....	101
1.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징계 현황 .....	101
2. 개인정보 보호 위반사례 .....	103
제3절 경찰의 개인정보 보호의식 설문조사 .....	109
1. 표본의 특성 .....	109
2. 조사결과 .....	112

**제4장 경찰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 향상 방안 ..... 132**

제1절 조직적 측면 .....	132
1. 개인정보 보호 조직 강화 및 전문인력 확보 .....	132
2. 정책 도입 시 개인정보 보호 법령 검토 .....	134
3. 분야별 개인정보 처리 세부 매뉴얼 제작 .....	137
4. 민원서식 현행화 .....	137
제2절 교육적 측면 .....	140
1.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교육 강화 .....	140
2. 사이버 교육 강화 .....	141
3. 교육·홍보 콘텐츠 개발 .....	142

**참고문헌 ..... 144**

## 표 목 차

<표 1> 주요 개인정보 유출 사건 .....	3
<표 2>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 .....	91
<표 3> 개인정보 보호법 사이버 강좌 내용 .....	94
<표 4>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시스템 게시판 구성 .....	97
<표 5> 2012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결과(기관별) .....	99
<표 6> 2012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결과(지표별) .....	100
<표 7>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징계 현황 .....	102
<표 8>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111
<표 9>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ID 개수 .....	113
<표 10>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비밀번호 개수 .....	113
<표 11> 개인정보 유출 인지 후 비밀번호 변경 여부 .....	114
<표 12> 인터넷 이용 후 로그아웃 습관 .....	116
<표 13> 아이핀(i-PIN) 발급 여부 .....	117
<표 14> 이용하는 인터넷 브라우저 종류 .....	118
<표 15> 개인정보 보호 교육·학습 경험 .....	119
<표 16>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학습방법 선호도 .....	120
<표 17>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분야별 학습 필요성 인식도 .....	121
<표 18> 개인정보 보호법 퀴즈 정답률 .....	125

## 그 림 목 차

<그림 1> 개인정보침해신고 상담건수 .....	3
----------------------------	---

<그림 2>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	4
<그림 3> 개인정보 보호법 사이버 강의(1) .....	95
<그림 4> 개인정보 보호법 사이버 강의(2) .....	96
<그림 5> 경찰청 주차장에 쌓여있는 경찰 문서 .....	106
<그림 6> 경찰서 쓰레기장에 방치된 경찰문서 .....	107
<그림 7> 방치된 치안센터에서 나온 신분증 .....	108
<그림 8> 여러 가지 인터넷 브라우저 .....	118
<그림 9>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서약서 .....	135
<그림 10> 신고민원포털의 민원서식 제공 .....	139

## 일러두기

이 보고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보고서이다. 경찰의 개인정보 보호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다른 부처·공공기관에서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치안정책연구소의 보고서 작성방식을 따르나 필요한 부분에서는 적절한 방식으로 작성하였으며, 보고서를 활용하는 곳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급적 많은 표와 그림을 사용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여백이 많이 있다. 지면 여백을 없애기 위해 그림과 표 크기를 줄이면 그림과 표 내용이 잘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불가피한 편집임을 밝힌다.

이 보고서에 명시된 인터넷 주소나 홈페이지 경로는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있다.

이 보고서를 흑백으로 인쇄하여 볼 경우 사진과 그림을 알아보기가 어려우므로 가급적 컬러로 인쇄해서 보거나 PC를 이용하여 컬러모니터로 보기를 권장한다.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우리나라는 UN(국제연합, United Nation)의 전자정부 발전지수와 온라인 참여지수 및 ITU(국제전기통신연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의 ICT(정보통신기술) 발전지수와 같은 주요 정보통신지수에서 1위를 차지하는 인터넷 선진국이다.<sup>1)</sup>

2012년 인터넷 이용자는 3812만 명(인터넷 이용률 78.4%)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서비스의 이용도 보편화되고 있다. 2012년 인터넷 뱅킹 등록자 수는 계속 증가하여 8000만 명을 넘어섰고, 전자상거래 총 거래액은 1144조 6890억 원으로 나타나 1000조 원 규모를 돌파하였다.<sup>2)</sup> 또한 2013년 1월 말 기준 스마트폰 이용자 수는 3329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sup>3)</sup>

그러나 이러한 정보화사회에 따른 부작용도 늘어나고 있다. 피싱(Phishing), 파밍(Pharming) 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해킹으로 인한 네트워크 장애, 개인정보 유출 및 음란물 유통, 스팸 메일·메시지, 악성 댓글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우리 일상에서 개인정보는 공공·민간 부문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표 1>과 같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

1) 2012년 발표자료 기준.

2) 국가정보원 외, 2013 국가정보보호백서, 2013, 5쪽.

3) 방송통신위원회, 유무선 통신서비스 가입자 통계, 2013.3.

고, <그림 1>과 같이 개인정보침해 상담건수는 증가하는 등 국민들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우려를 느끼고 있다.

<표 1> 주요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발생일시	기업	개인정보 유출인원	유출원인
2008년 1월	옥션	1863만 명	해킹
2008년 4월	하나로텔레콤	600만 명	내부유출
2008년 9월	GS칼텍스	1150만 명	내부유출
2011년 7월	SK컴즈	3500만 명	해킹
2011년 11월	넥슨	1320만 명	해킹
2012년 7월	KT	870만 명	해킹
2013년 2월	코웨이	198만 명	내부유출
2013년 6월	대리운전 전문 정보업체	420만 명	내부유출

<그림 1> 개인정보침해신고 상담건수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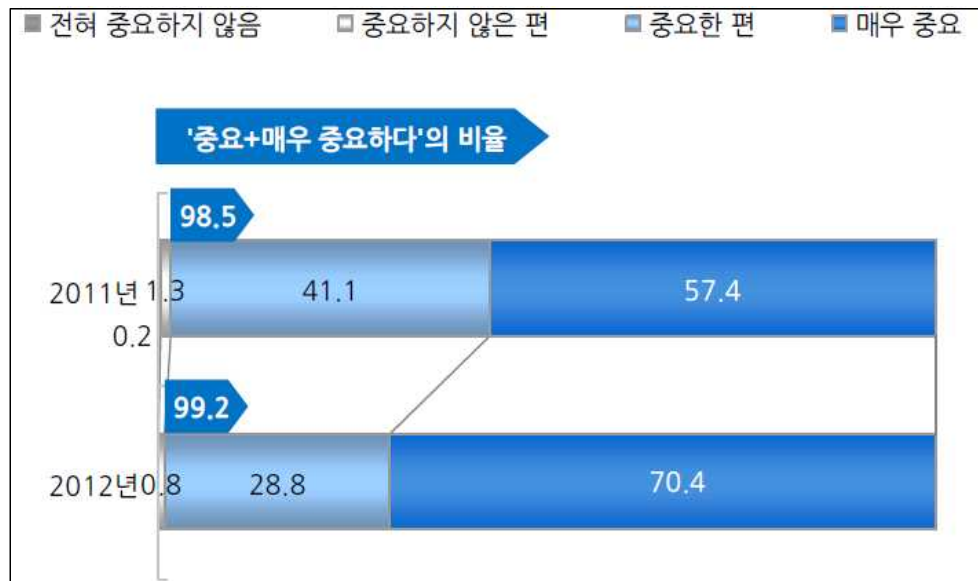
※ 2013년은 1월~7월 건수

출처: 인터넷통계정보 검색시스템(isis.kisa.or.kr)

한편 국내 개인 인터넷 이용자 99.2%는 평소 인터넷 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에는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의 비율이 각각 41.1%, 57.4%로 나타났으나, 2012년에는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의 비율이 각각 28.8%, 70.4%로 ‘매우 중요하다’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sup>4)</sup>

<그림 2>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단위: %)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2013, 21쪽.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어느 기관 보다 많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찰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높은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개

4)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2013, 21쪽.

인정보 보호의식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 및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경찰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해설로서 개인정보 보호의 개요와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제3장은 경찰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과 경찰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 그리고 경찰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경찰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4장에서는 경찰의 개인정보 보호의식 향상 방안을 조직적 측면과 교육적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의 주요 결과물로서 경찰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사이버 강의를 제작하여 전국의 경찰청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첫째, 온-오프라인을 통해 관련 자료와 문헌을 수집하고 고찰하였다. 둘째,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관계자, 전문가, 업무담당자와 인터뷰를 하고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하였다. 셋째, 전국의 경찰청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경찰의 개인정보 보호의식을 조사하였다. 넷째, 개인정보 보호법 사이버 강의 제작을 위해 강의 원고를 작성하고 경찰청의 개인정보 보호 담당 부서 검토와 제안을 받아 강의 제작의 완성도를 높였다.

## 제2장 경찰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

본 장에서는 경찰이 꼭 알아두어야 할 개인정보의 개념과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내용을 해설하기로 한다. 보다 자연스러운 학습을 위하여 보고서 기술방식이 아닌 실제 강사가 설명하는 것처럼 해설문장을 작성하였음을 밝힌다. 아울러 학습자는 본인이 좋아하는 연예인, 배우, 캐릭터(성우)가 설명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읽어나가는 것을 권한다.

본 장에서 설명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법률 제11690호(2013. 3. 23. 시행) 기준이며, 이후 법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 제1절 개인정보 보호 개요

### 1. 개인정보 보호의 의미

#### 가. 헌법상 사생활권

헌법 제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8조	·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6조	·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헌법상에 명시된 사생활권, 즉 프라이버시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헌법 제17조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있습니다. 헌법 제18조에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있으며, 헌법 제16조에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고 하여 국민의 사생활권을 헌법에서 명시하여 보장하고 있습니다.

## 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자신의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지를 정보 제공 이전에 명확하게 인지하고
- ✓ 이용자가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정정할 수 있으며
- ✓ 더 이상의 개인정보 이용을 원치 않는 경우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파기를 요청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

# 개인정보 보호의 의미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

그런데,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본권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있습니다.

2005년 5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법과 관련한 위헌확인 심판 결정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sup>5)</sup>

그렇다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5) 99헌마513.

-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자신의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지를 정보 제공 이전에 명확하게 인지하고
- 이용자가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정정할 수 있으며
- 더 이상의 개인정보 이용을 원치 않는 경우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파기를 요청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개인정보 보호의 의미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개인정보의 개념과 유형

### 가. 법률상 개인정보의 개념

<p><b>개인정보 보호법</b>                  제정 2011.3.29 법률 제10465호                  시행일 2011.9.30</p>	<p><b>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b></p>
<p>제2조(정의)                  1. "개인정보"란 <b>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b>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6. "개인정보"란 <b>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b>를 말한다.</p>
<p>▶ 「<b>생존하는 개인</b>」에 관한 정보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自然人)이어야 하며, 법인(法人) 또는 단체의 정보는 해당되지 않는다.</li> <li>• 사망하였거나 실종신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li> </ul> <p>▶ 개인에「<b>관한</b>」정보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 개인에 대한 사실·판단·평가 등 특정 개인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li> <li>• 개인과 관련된 사실적인 정보(예: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뿐 아니라 해당 개인에 대한 타인의 의견·평가·견해 등과 같은 주관적인 정보(예: 신용평가정보, 사회적 지위)도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li> </ul> <p>▶ 「<b>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b>」정보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정보가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가능"해야 한다. 통계적으로 변환되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인자가 제거된 상태라면 개인정보라고 할 수 없다.</li> <li>• 예)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혈액형 정보는 개인정보 아님</li> <li>• 예) 혈액형+주소 → 개인식별이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li> </ul>	

그럼 어떤 것이 개인정보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서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방금 두 법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나와 있고,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나옵니다.

‘살아있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는 것은,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自然人)**이어야 하며, **법인(法人)** 또는 **단체의 정보**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망하였거나 실종신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개인에 관한 정보’라는 것은, 해당 개인에 대한 사실·판단·평가 등 특정 개인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뜻으로서,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같은 개인과 관련된 사실적인 정보 뿐만 아니라, 해당 개인에 대한 의견, 평가, 견해 등과 같은 주관적인 정보도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는, 개인정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가능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통계적으로 변환되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인자가 제거된 상태, 예를 들어 이름이나 주민등록 번호 일부를 별표 같은 것으로 바꾼다면 개인정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더 들어 보겠습니다. 혈액형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지만, 주소와 결합해서 개인식별이 가능하다면 그 정보는 개인정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모 아파트에 사는 RH-AB형인 남자”라고 하면 범위가 확 줄어들어서 개인식별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 나. 개인정보의 유형과 종류

그럼 개인정보의 유형과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래 두 여성의 대화를 보세요.

대화자	대화내용	개인정보 유형	개인정보 예
여자A	있잖아, 이번에 소개팅에 나오는 남자, 키가 몇이야? 안경 써?	신체적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체정보</li> <li>의료·건강정보</li> </ul>
여자B	한 170 정도? 안경은 써.		
여자A	(조금 실망) 좀 키가 작네... 학교는 어디 나와서 어느 직장 다녀? 부장 정도 되나?	사회적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정보</li> <li>근로정보</li> <li>자격정보</li> </ul>
여자B	한국대 나와서 LK그룹에 다니고, 아직 대리일껄?		
여자A	(약간 더 실망) 어 그렇구나. 고향은 어디야? 형제는 몇 명이야? 지금 어디에 살아?	일반적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년월일</li> <li>이름, 주소, 출생지</li> <li>가족관계</li> </ul>
여자B	고향은 서울이고, 누나가 2명 있어. 지금 강남에 살아.		
여자A	어머~ 시누이 많은 건 싫은데(좀 더 실망). 근데 강남 살면 집에 돈 좀 많을까? 차는 뭐 타?	재산적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금융정보</li> <li>신용정보</li> </ul>
여자B	신도시에 아파트가 몇 채 있다더라. 차는 무슨 외제차 타고 다녀.		
여자A	(급 방긋) 와 짱이다. 어머, 이런 남자 소개 시켜줘서 고맙다 얘.	법적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과·구속기록</li> <li>이혼기록</li> <li>납세기록</li> </ul>
여자B	근데, 이혼해서 애가 하나 있어.		

순식간에 한 남자의 신체정보, 사회적 정보, 일반적 정보, 재산적 정보, 법적 정보와 같은 개인정보가 새나간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통화내역·문자내역이나 IP주소 같은 통신정보와, 위치정보와 같은 유형의 개인정보가 있으며,

좋아하는 것(기호), 취향·성향, 신념, 사상 등과 같은 정신적 정보가 있습니다.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함**

- 인적사항 : 성명, 주민번호 등
- 개인의 비밀 :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태, 교육, 건강·의료, 재산, 문화활동 및 정치적 성향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 이용을 위해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 이름, 주민번호, 주소, e-mail,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 취미, 가족관계, 혼인여부, 출신학교 등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이용자에 관한 정보**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쿠키(cookie), 접속IP정보, 결제기록, 이용 정지 기록, 사업자가 마케팅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가공한 회원정보 등
- 접속로그, 쿠키 등은 식별정보와 연계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는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같은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개인의 비밀,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태, 교육, 건강, 의료, 재산, 정치적 성향 등 참 많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 이용을 위해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배우자를 소개받기 위해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할 때 정말 많은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이용자에 관한 정보도 있습니다. 언제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어떤 컴퓨터로 접속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물건을 결제했는지, 이런 정보들은 처음에는 이용자가 제공하지 않았지만,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정보들입니다. 참고로, 쿠키(Cookie)라는 것은 컴퓨터에 저장되는 작은 용량의 파일인데, 이 속에 아이디나 비밀번호 같은 것들이 저장되는 용도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다. 개인정보 범위 확대



(출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KISA, 2011, 11쪽)

사회가 발전하면서 개인정보 범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으로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2000년대 초반 해도 이런 위치정보를 이용

한 서비스가 지금처럼 일반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또, 홍채 지문, DNA 정보 같은 생체정보가 지금처럼 활용될 것이라고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개인정보가 나오면 이에 따라 새로운 법과 제도가 마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개인정보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데, 얼마나 확대될지 예측하기가 어려우며 앞으로 어떤 새로운 법과 제도가 필요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가상현실 속 내 아바타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제도가 필요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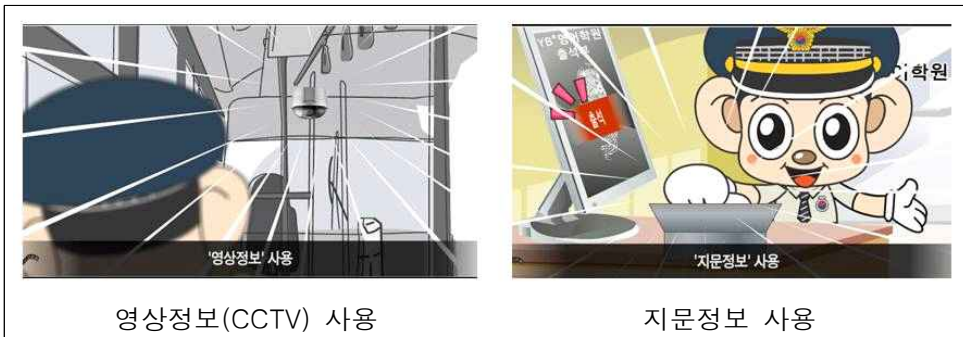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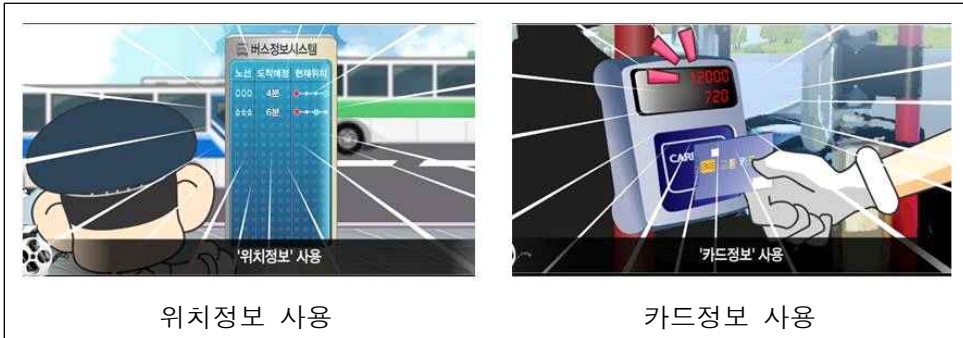
### 3. 개인정보의 활용

<p><b>공공기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정보 제공</li> <li>• DB 연계를 통한 행정 효율화 등</li> </ul>	<p><b>학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수강신청,</li> <li>• 학생관리</li> </ul>	<p><b>영화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모바일 예매</li> <li>• 무인발권시스템</li> </ul>	<p><b>보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이력</li> <li>• 병력</li> </ul>
<p><b>정유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멤버십</li> <li>• 주유포인트 제공</li> </ul>	<p><b>여행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항공권 발권</li> <li>• 온라인 예약</li> </ul>	<p><b>결혼중계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오프라인 회원</li> <li>• 신상정보를 통한 배우자감 매칭</li> </ul>	<p><b>온라인쇼핑</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정보</li> <li>• 배송지 정보</li> </ul>

공공·민간 업무 대부분은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함

우리 일상에서 개인정보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공공이나 민간 업무 대부분은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아래 그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ID, 비밀번호 사용

이름,전화번호,배송지주소 사용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용  
병명, 과거진료기록 사용



동·호수 정보 사용



이메일 등 연락처 사용



사진위치정보 사용

## 제2절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내용

### 1. 개인정보 보호 법제현황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이전	
분야별 개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 보호의무 적용	
공공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li> <li>• 전자정부법</li> <li>• 주민등록법</li> </ul>
정보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정통망법)</li> <li>• 위치정보보호법</li> <li>• 통신비밀보호법</li> </ul>
금융/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li> <li>•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li> </ul>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기본법</li> <li>• 초·중·등교육법</li> </ul>
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법</li> <li>• 건강검진기본법</li> <li>• 생명윤리법</li> <li>• 장기이식법</li> <li>• 응급의료법</li> </ul>

※ 분야별 개별법을 모두 제시한 것이 아님

위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분야별로 개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개별법을

적용하다보니 당시 적용대상은 51만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3월 29일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고 2011년 9월 30일 시행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일반법이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용대상이 350만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에는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에 숙박업자, 비디오대여업, 부동산중개업자, 결혼중개업자 등 17개 분야 사업자를 준용사업자로 하여 정보통신방법상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따르도록 했었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개별법을 적용하다 보니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적용 받지 않는 법률사각지대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공공과 민간의 모든 개인정보 처리를 규율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하여 비영리단체, 법원 등 헌법기관, 민간사업자, 개인 등 약 350만개 모든 공공기관과 사업자를 규율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폐기되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의의

- 모든 공공기관, 사업자를 규율대상으로 -

약 350만개 모든 공공기관과 사업자를 규율대상으로 확대(약 300만개 기관, 사업자 제도권 편입), 법적용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큰 의의

개별법간 상이한 처리기준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 이용, 처리, 파기 단계별 공통된 보호기준과 원칙을 규율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권 보장, 개인정보 유출시 통지, 신고제도, 집단분쟁조정제도, 권리침해 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 도입으로 국민의 피해구제가 한층 강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의 처리를 엄격히 제한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제한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

대통령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정책사안을 심의, 의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설치하여 정책과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크게 강화

## 2. 개인정보 보호법 구성

<b>개인정보 보호법</b>	
<b>제1장</b> 총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률의 목적</li> <li>• 용어의 정의(적용범위)</li> <li>• 개인정보 보호 원칙</li> <li>• 정보주체의 권리</li> <li>• 다른 법률과의 관계</li> </ul>
<b>제2장</b>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구성, 기능</li> <li>•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li> <li>• 개인정보 보호 지침</li> <li>•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li> </ul>
<b>제3장</b> 개인정보의 처리	<b>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기준, 수집제한</li> <li>• 개인정보 제공 기준, 이용·제공 제한</li> <li>• 개인정보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li> <li>• 개인정보의 파기</li> <li>• 동의를 받는 방법</li> </ul>
	<b>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li> <li>•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li> <li>•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제한, 영업양도 등 이전 제한</li> </ul>
<b>제4장</b>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조치의무</li> <li>•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li> <li>•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li> <li>•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li> <li>• 개인정보영향평가, 개인정보 유출 통지</li> </ul>
<b>제5장</b>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li> <li>•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li> <li>• 손해배상책임</li> </ul>

<b>개인정보 보호법(계속)</b>	
<b>제6장</b>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li> <li>• 조정의 신청, 처리기간, 자료의 요청, 조정 전 합의 권고</li> <li>• 분쟁의 조정, 조정의 거부 및 중지 등</li> <li>• 집단분쟁조정, 조정절차</li> </ul>
<b>제7장</b> 개인정보 단체소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소송의 대상, 전속관할, 소송대리인, 소송허가신청 및 요건</li> <li>• 확정판결의 효력 등</li> </ul>
<b>제8장</b> 보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의 일부제외</li> <li>• 금지행위, 비밀유지의무,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li> <li>• 침해사실의 신고,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li> <li>• 시정조치, 고발 및 징계권고</li> <li>• 결과공포, 권한위임·위탁 등</li> </ul>
<b>제9장</b> 벌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벌칙, 과태료, 양벌규정</li> </ul>
부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일, 다른 법률의 폐지,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개정</li> </ul>

개인정보 보호법 구성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제1장 총칙에서부터 제9장 벌칙까지 본문 9장과 75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법률의 목적과 용어 정의, 개인정보보호원칙,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은 두개 절로 나뉘져 있습니다. 제3장 제1절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파기, 즉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제2절에서는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운영 제한, 업무위탁과 영업양도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와 이전 제한 등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제4장에서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5장에서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정정·삭제하고, 처리를 정지하는 권리와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제6장에서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구성, 업무 등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제7장에서는 개인정보 단체소송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8장은 보칙으로, 법적용을 제외하는 경우와 금지행위, 비밀유지의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9장 벌칙에서는 법 위반 시 처해지는 벌칙과 과태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 보호법상 용어

개인정보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정보주체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
영상정보 처리기기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CCTV, 네트워크 카메라)
공공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입니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처리**는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입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행위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정보주체**는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입니다.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입니다. 컴퓨터 파일인지, 서류철로 보관하는 종이문서인지 하는 물리적인 형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폐기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정보파일은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이라고 되어 있어서 동사무소 민원서류 같이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는 보호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입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즉 CCTV와 인터넷에 연결되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에서 **공공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각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공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특수법인, 학교가 있습니다.

<b>개인정보 처리자</b>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b>관서장</b> (경찰청장, 지방청장, 경찰서장)
<b>개인정보 보호책임자</b>	해당기관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 책임	<b>정보통신부서장</b> 경찰청:정보화장비정책관 지방청:정보화장비과장 경찰서:경무과장
<b>개인정보 보호담당자</b>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위임업무 및 개인정보 취급자의 관리업무 수행	정보통신부서의 실무담당자
<b>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b>	부서에서 보유한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 수행	개인정보 보유부서의 장 (생활안전과장 등)
<b>개인정보 취급자</b>	업무수행을 위해 직접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각 부서의 실무담당자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입니다. 경찰청장, 지방청장, 경찰서장 등과 같은 관서장이 해당됩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해당기관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 책임을 지는데, 정보통신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해당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로부터 위임 받은 개인정보 보호 업무와 개인정보 취급자의 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정보통신부서의 실무담당자가 해당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책임자**는 부서에서 보유한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 수행하는데, 각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이 해당됩니다.

끝으로 **개인정보취급자**는 업무수행을 위해 직접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각 부서의 실무담당자가 해당됩니다.

## 4.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파기

개인정보 처리단계별로 해당 법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가능한 경우 [법 제15조 ①]**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의 특별한 규정,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5. 정보주체 등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 보호 (사전동의 받기 곤란한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벌칙**

위반 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먼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가능한 경우는 법 제15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2. 법률의 특별한 규정,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3에서는 “경찰청장은 보호시설의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아동등의 지문등 정보를 등록·관리할 수 있

다”고 되어 있습니다.

3.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서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호·경비 및 대간첩작전수행, 치안정보 수집, 교통 단속, 공공 안녕과 질서유지의 직무를 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찰관이 법이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란,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서는 법령 등에서 부여하는 의무나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4.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5. 정보주체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나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자연재해로 실종되거나 고립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하여 연락처, 주소, 위치정보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입니다.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6가지 경우 외에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5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 [법 제15조 ②]**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벌칙**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목적과,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언제까지 보유하며 이용하는지, 그리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을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필요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법 제16조 ①]**

-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
-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

**필요최소 이외 개인정보 수집 거부시 불이익 금지[법 제16조 ②]**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면 안됨

**벌칙**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16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제한 없이 마구 수집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 제16조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의 제한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법15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는데, 이때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면 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몸짱 좀 되어 보겠다고 헬스클럽에 회원

등록하러 왔습니다. 회원 가입원서를 작성하려고 살펴보니까

이름, 전화번호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이걸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생년월일과 그 생일이 음력인지 양력인지를 적으라고 합니다. 헬스클럽에서 왜 생년월일을 수집하는지 관장, 즉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물어봅니다.

“관장님, 제 생년월일을 알아야 할 이유가 뭔가요?”

이때, 관장은 생년월일을 꼭 수집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해야 하는 겁니다.

“그건 회원님의 나이에 맞는 운동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에 맞는 운동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면, ‘생년’ 즉 나이만 수집해도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생년이 아닌 생년월일 음력양력까지 수집하는 것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년월일을 적을 수 없다고 할 때 회원가입을 못한다, 즉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회원 가입서에 이름, 전화번호, 나이는 필수항목, 생일은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여 수집하면 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 시 확인 사항

-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 수집인가?
- 법령에 근거가 없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고 있는가?
- 수집 목적이 분명한가?
-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있는가?
-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것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가?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할 수 있는 경우[법 제17조 ①]**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의 특별한 규정,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 등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 보호 (사전동의 받기 곤란한 경우)

**벌칙**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의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법 제17조 ②]**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벌칙**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공’이란 개인정보처리자 외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개인정보가 있는 서류나 컴퓨터 파일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가 있는 시스템에 접속하는 권한을 허용하여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복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제3자 제공’에 포함됩니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의 특별한 규정과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3. 법령에서 정한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나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경우는 앞에서 설명드린 법 제15조 1항에 명시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외에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면 제공한 자와 그 사정을 알고 제공받은 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정보주체로부터 받을 때 알려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개인정보 항목을 언제까지 보유하고 이용하는지, 그리고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시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 중 하나라도 변경할 경우에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제18조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한 경우 [법 제18조 ②]**

1.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3.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
4. 통계작성, 학술연구에 필요한 경우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
5.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수행이 불가능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국제협정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등 제공에 필요한 경우
7.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유지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9. 령 및 감호, 보호처분 집행

공공기관  
해당

**벌칙**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1항에는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공사단체등에 대하여 직

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과 같은 하위법상의 근거로는 목적 외 이용과 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3.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입니다.

어떤 사무실 건물에서 범죄가 발생하여 경찰관이 건물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 영상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 보호 이유를 들어 입주사 직원의 동의가 모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고 하여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일선 현장의 사례가 있습니다.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유지를 위해 수사기관 등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관의 영장이나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본인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CCTV 영상자료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삭제된다는 점에서 CCTV영상자료는 그 자체로 급박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범조항을 근거로 형사소송법 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협조요청만으로도 관리사무소는 입주사 직원들의 동의 없이 CCTV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청 시에 이런 관련 법령 및 요청 목적 등을 명확히 알리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자료제공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이후 다섯 번째 부터는 공공기관에만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입니다.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입니다.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외에 개인정보를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제공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18조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동의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법 제18조 ③]**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벌칙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정보를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동의를 정보주체로부터 받을 때 알려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개인정보 항목을 언제까지 보유하고 이용하는지, 그리고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야 합니다. 또한 이런 사항 중 하나라도 변경할 경우에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함 [법 제22조 ①]
- 홍보/판매권유를 위한 동의 시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법 제22조 ③]
- 벌칙**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앞의 설명에서 “동의를 받는 경우”가 많이 나왔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필수동의항목’과 ‘선택동의항목’을 따로 구분하여 동의를 각각 받아야지, ‘전체동의’같은 방법으로 동의를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보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 부분 동의에 서명하거나 인터넷에서 이 부분에 동의를 선택하면 광고 전화나 문자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항들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b>선택동의 거부, 홍보/판매권유 동의 거부, 목적외 이용/제3자 제공 거부시 재화/서비스 제공 거부 금지 [법 제22조 ④]</b>	
<b>벌칙</b>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b>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법 제22조 ⑤]</b>	
<b>벌칙</b>	위반 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의를 받는 방법(영 제1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면(직접 발급, 우편, 팩스 등) 전달 후 서명·날인</li> <li>✓ 전화(녹취 필요), 인터넷 홈페이지 동의, 전자우편 발송 후 동의 회신</li> <li>✓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li> </ul> </li> </ul>	

또, 선택적으로 동의하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홍보·판매권유에 대한 동의를 거부한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거부 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

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즉, 아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아이 엄마에게 연락하려고 “엄마 전화번호 알려줄래?”라고 엄마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것은 적법한 행위입니다.

만일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처리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동의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전달하거나 보내고 서명 날인을 받는 방법,
- 전화를 통해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 한다는 의사표시를 확인 받는 방법(물론 이때는 전화 내용 녹취가 필요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동의, 전자우편을 보내고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긴 회신을 받는 방법이나
- 그 밖에 이러한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5.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는 개인의 사생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적 차별을 초래하거나 인권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중요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 가. 민감정보의 처리제한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민감정보 원칙적 처리 금지**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

**민감정보 처리 허용**

- 별도로 동의를 받는 경우
-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벌칙**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민감정보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와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가 있습니다. 이러한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①정보주체에게 민감정보를 제공받는자가 누구인지, 이용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을 알리고 별도로 동의를 받는 경우와 ②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b>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b>	
<b>고유식별번호 원칙적 처리 금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시행령 제19조)</li> </ul>	
<b>고유식별번호 처리 허용 [법 제24조 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별도로 동의를 받는 경우</li> <li>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li> </ul>	
<b>벌칙</b>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고유식별번호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4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감정보와 마찬가지로 고유식별번호도 원칙적으로 처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①정보주체에게 고유식별번호를 제공받는자, 이용목적, 제공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을 알리고 별도로 동의를 받는 경우와 ②법령에서 고유식별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민감정보와 고유식별번호를 법령에 의한 경우 처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령’ 이라고 했으므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의해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8조를 보면 “국가경찰공무원은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정보와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인터넷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 외 가입방법 제공의무[법 제24조 ③]

- 공공기관, 1일 평균 이용자 1만명 이상
- i-PIN, 휴대전화인증,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등

벌칙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공공기관과 하루 평균 이용자가 1만 명 이상인 홈페이지는 회원으로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대체가입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참고로, 현재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본인인증방법으로는 아이핀, 휴대전화인증,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등이 있습니다.



## 6. 영상정보처리기기

지금부터 우리 경찰의 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즉, 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법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google.com에서 CCTV 검색)

<b>영상정보처리기기</b>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
<b>개인영상정보</b>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먼저 관련 용어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인터넷에 연결되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율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가능한 경우[법 제25조 ①]**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벌칙**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가능한 경우는 법 제25조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를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법 조항에서 “공개된 장소”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공개된 장소”에 대해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p><b>공개된 장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 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의미</li> <li>• 사유지일지라도 불특정 다수가 왕래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면 공개된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 공원, 공항, 항만, 주차장, 놀이터, 지하철역 등의 공공장소</li> <li>☞ 백화점, 대형마트, 상가, 놀이공원 등 시설</li> <li>☞ 버스, 택시 등 누구나 탑승할 수 있는 대중교통</li> </ul> </li> </ul>
<p><b>경찰관서 내 공개된 장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 예시와 같이 <b>지정된 보호구역을 제외한 장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장, 전의경 생활공간,</li> <li>☞ 통제구역: 112종합상황실, 무기고, 탄약창, 종합조회처리실 등</li> <li>☞ 제한구역: 기계실, 정보·보안·과학수사 사무실, 영상조회실, 중계소, 문서고 등</li> </ul> </li> </ul>

‘공개된 장소’란 정보 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사유지일지라도 불특정 다수가 왕래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면 공개된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는

- 도로, 공원, 공항, 항만, 주차장, 놀이터, 지하철역 등의 공공장소
  - 백화점, 대형마트, 상가, 놀이공원 등 시설
  - 버스, 택시 등 누구나 탑승할 수 있는 대중교통
-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관서 내에서 공개된 장소란 어디를 말할까요? 유치장이

나 전의경 생활공간, 그리고 보안업무규정상 지정된 보호구역을 제외한 장소가 해당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적용대상

**법 제25조**의 적용 대상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 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더라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규제대상에 포함된다.<sup>6)</sup>

이 법 제25조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만을 규제하고 있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촬영) 및 이용 등에 대해 일일이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를 대신하여 안내판 설치, 사전 의견수렴 등의 보호조치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sup>7)</sup>

####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금지장소[법 제25조 ②]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 ※예외: 법령에 근거한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벌칙**

위반 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면 안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6)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행정안전부, 2011, 163쪽.

7) 앞의 글, 164쪽.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즉 사우나실이죠, 그리고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입니다.

다만, 법령에 근거한 교도소나 정신보건시설에서는 사생활 공간이라도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 제한

##### 영상정보처리기 설치 시 의견수렴[법 제25조 ③]

- 공개된 장소 경우
  - ✓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 ✓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시행령 제23조 ①)
-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한 장소 경우
  - ✓ 관계 전문가(인권위원 등) 및 해당시설 종사자,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시행령 제23조 ②)


법 제25조 1항 각호에 해당하여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에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를 하거나, 해당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교도소나 정신보건시설에서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장소, 즉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에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예를 들면 인권위원 등), 그리고 해당시설 종사자, 해당 시설에 구금되어 있거나 보호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 제한**

**영상정보처리기 안내판 설치법 제25조 ④, 영 제24조**

- 안내판 기재사항
  - ✓ 설치 목적 및 장소
  - ✓ 촬영 범위 및 시간
  - ✓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 안내판 설치 장소
  -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
- 건물 안에 여러 개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하는 경우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 설치





-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로 안내판 설치 갈음 가능한 경우
  -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 목적으로 설치, 개인정보 침해 우려 적은 경우
  - 장소적 특성으로 안내판 설치 불가 또는 안내판 설치해도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산불감시용)

- 안내판 설치 제외 시설
  - 각 관련법에 의한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

**벌칙**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할 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안내판에는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

명 및 연락처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구점에서 파는 ‘CCTV 녹화중’ 문구만 있는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법령 위반입니다.

안내판은 출입구 등과 같이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만일 건물 안에 CCTV를 여러 개 설치하는 경우라면,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설치지역’ 이라고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하면 됩니다.

그런데, 산불감시 CCTV와 같이 장소적 특성으로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 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해도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판 기재사항을 게재하면 됩니다. 또한 교통단속이나 교통흐름 조사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 정보 침해 우려가 적은 경우라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는데요, 관련법에 의한 군사시설이나 국가중요시설, 보안목 표시설 등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제한 [법 제25조 ⑤]**

-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 또는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됨
- 녹음기능 사용 할 수 없음

**벌칙**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법 제25조 ⑥]**

-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법 제29조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클릭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벌칙**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 또는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법 제29조에서 정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 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하나 더 말씀 드리면,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하거나 분실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하는데, 방침 내용은 시행령 제25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마련 (법 제25조 ⑦)

### 시행령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을 삽입하여 홈페이지 게시 가능

그리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데, 공공기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을 따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사무 위탁 가능(법 제25조 ⑧]

#### 시행령 제26조(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안내판 등에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

**비공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이 가능한 경우(법 제15조 적용)**

1. 그 구성원이나 출입·이용이 허가된 사람들의 동의(법 제15조 제1항 제1호)
  2. 다른 법률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예)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3.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법 제15조 제1항 제6호)
- ※ 안내판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등 법 제25조를 준용토록 권장

지금까지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비공개 장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공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에 대해서는 그 설치·운영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정보에 대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 보호법 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일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공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15조를 적용하여,

- ① 비공개 장소에 있는 구성원이나 출입/이용이 허가된 사람들의 동의를 받는 경우
- ② 다른 법률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예를 들면 형사소송법에 의한 피의자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입니다.
-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이런 비공개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도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을 정하는 것과 같이 법 제25조를 준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순수한 사적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개인 주택, 개인소유 차량 등 순수한 사적 공간에 설치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함  
 예) 단독주택·연립주택 등의 대문, 현관 등에 범죄예방(방범) 목적으로 감시용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개인의 주택, 개인 소유의 차량 등 순수한 사적(私的)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이 배제됩니다. 예를 들면, 단독주택·연립주택 등의 대문, 현관 등에 범죄예방(방범) 목적으로 감시용 CCTV를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된 장소가 공개된 장소가 아니며, 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개인 등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7.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

### 가. 경찰관서별 담당자

구분	관서별 담당자	담당업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li> <li>지방청: :정보통신부서장(단, 정보통신부서가 없는 경우 경무과장)</li> <li>직속기관 :운영지원 과장(단, 경찰병원은 총무과장)</li> <li>경찰서: 경무과장</li> </ul>	개인영상정보보호 업무의 총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관리 업무의 총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분야별 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찰관서의 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부서의 장을 분야별 책임자로 지정</li> <li>지구대·파출소의 경우 지구대장·파출소장이 분야별 책임자</li> </ul>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유지보수 및 개인영상정보 열람, 삭제 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
개인영상정보취급자	분야별 책임자가 지정	주1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b>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기록부</b> 에 기록 고장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리 상황실 등에서 통합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 해당 장소 근무자 등을 총괄 담당으로 지정하여 고장 등 특이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도록 할 수 있음

경찰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찰관서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해당 경찰관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인정보 책임자**가 됩니다. 각 경찰관서에 따라

- 경찰청의 경우 정보화장비정책관이 책임자가 되고요,
- 지방청은 정보통신부서장이 책임자가 됩니다.
- 직속기관은 운영지원과장이고,
- 경찰서는 경무과장이 책임자가 되어서

개인영상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을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합니다.

그리고 **분야별 책임자**가 지정되는데, 경찰관서의 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부서의 장을 분야별 책임자로 지정합니다. 지구대 파출소의 경우 지구대장, 파출소장이 분야별 책임자가 됩니다.

이 분야별 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유지보수 및 개인영상정보 열람, 삭제 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개인영상정보취급자**는 분야별 책임자가 지정을 합니다. 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취급자가 주1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하며, 고장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상황실 등에서 통합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 해당 장소 근무자 등을 총괄 담당으로 지정하여 고장 등 특이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나. 일선 현장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 제6조(분야별 책임자의 지정) 2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책임자는 보유한 영상정보에 대한 개인영상정보취급자를 지정하여 주1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하며, 고장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일선에서 실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음의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 지구대장: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해 주세요. 아 참, 오늘이 **일주일에 한번씩 CCTV 기기 점검** 하는 날이지? 김경사님!
- 김경사: 네 대장님.
- 지구대장: **김경사님이 우리 지구대 개인영상정보취급자**이시니까, **CCTV 이상 없는지 점검하시고, 결과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기록부에 기록**하세요.
- 김경사: 예, 대장님 바로 점검하겠습니다.



- CCTV 카메라 점검



- 녹화장치 점검



- 김경사: 어디보자, 날짜요일 먼저 쓰고, CCTV 카메라 정상이고, 녹화장치도 다 정상이니까 전부 동그라미 치면 되는구나. **한달 전 영상** 지워진 것 확인 했으니 **영상기록물 자동파기** 이것도 **확인** ok. 담당자 결재칸에 사인하고 지구대장님 결재 받으면 끝.



- 김경사: 대장님 점검 마쳤습니다. 결재 바랍니다.
- 지구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주에 **CCTV 카메라** 고장난 것 제가 **수리** 지시했었는데 고쳤나요?

- 김경사: 네, **대장님께서 지시하신 후 제가 바로 CCTV 업체에 연락해서 수리**했습니다.
- 지구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재 사인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기록부

담 당	책임관

201 년 월 일 ( 요일)

◎ 주간점검(대상 : )				
구분	내용	결과 정상:○불량:× 정비:△	고장 / 정비 내용	비 고
CCTV 카메라	영상표출 상태			
	작동상태			
	기능설정 상태			
	외관 설치 상태			
	전원공급 상태			
녹화장치 (DVR)	영상녹화 상태			
	영상기록물보유 상태			
	기능설정 상태			
	외관 설치상태			
	전원공급 상태			
※ 영상기록물 자동파기 확인 : 예) ○월 ○일 자료까지 자동파기 됨을 확인함. ※ 영상정보 보유기간 30일, 수사부서·유치장 보유기간 90일				

## 다.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정보주체의 열람요구**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  
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의 신분증명서를 제출 받아 확인

1.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2.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  
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

신청서식: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  
구서 클릭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열람이 가능한 경우는

- ① 정보주체(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인 경우입니다.
- ②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인 경우입니다.

그냥 신분증만 확인하고 보여주면 안 됩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개인 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는 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청구서				처리기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0일 이내
청 구 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요 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 란할 수 있 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11.01.01 18:30 ~ 2011.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p>「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청구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귀하</p>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 다른 사람의 개인영상 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 즉 모자이크 처리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때 정보주체 이외 다른 사람의 개인영상에 대해 동의를 얻는다면 모자이크 처리 같은 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정보주체의 열람요구 거부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함)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

정보주체의 정당한 열람 요구에 대해 부당한 제한이나 거절을 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보주체의 열람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①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공공기관에 한합니다.

②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입니다. 당연한 경우입니다. 참고로, 개인영상정보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간 보유해야 하고, 수사사무실이나 유치장의 경우는 90일간 보유해야 합니다(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 제9조 1항).

③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일선에서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음의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 지구대에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온다. 이 남자는 주취난동으로 지구대에 여러 번 왔던 사람이다.

- 남자: 저, 수고하십니다.
- 김경사: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니, 선생님은 술만 마시면 지구대에 와서 난리 치던 분 아닌가요?
- 남자: (멋적은 듯이) 네, 맞습니다.
- 김경사: 오늘은 웬일로 술도 안 취했는데 저희 지구대에 오셨나요?
- 남자: 예, 주위에서 제가 술만 마시면 사람이 돌변한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러는지 술 먹고 지구대에 왔을 때 CCTV 에 제가 녹화된 장면을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가 술 먹고 돌변하는 모습이 사실이라면 제가 술을 딱 끊겠습니다.
- 지구대장: 그렇시군요. 김경사님, 이 분께 CCTV 영상 열람을 처리해 드리세요.
- 김경사: 예 알겠습니다.



- 김경사: 그럼 우선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보여주시고 여기 개인 영상정보열람 청구서를 작성해 주세요.
- 남자: 예.



- 김경사: 어디 보자..... 그래 찾았다. 어, 그런데 어찌지? 이날 근무했던 이순경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네?  
이걸 어찌죠? 선생님의 영상은 찾았는데 우리 지구대 직원이 영상에 같이 나와 있어서 바로 열람시켜드릴 수는 없고요, 영상에 나온 직원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 해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10일 안으로 처리 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 지구대 문을 열고 CCTV에 나온 이순경이 들어온다.

- 이순경: 순찰 다녀왔습니다.
- 김경사: 아, 이순경님. 마침 오셨네요.
- 이순경: (놀라면서)아니 이 분은 술만 마시면 지구대에 와서.....?
- 남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면목 없습니다.
- 김경사: 이 분께서 자신의 술취한 모습을 보고 싶다고 CCTV 영상열람을 청구하셨는데, 그 영상에 이순경 얼굴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순경 얼굴을 모자이크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열람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던 중이었습니다.
- 이순경: 그렇군요. 저는 **제 얼굴이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 김경사: 그래요? 잘 됐네요. 그럼 **지금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겠습니다.



# 남자가 난동 부리는 모습, 이순경이 힘들게 제지하는 모습이 모니터에 나온다

- 남자: 세상에, 저 술 취한 개가 바로 나라니 믿겨지지가 않아! 혹시 제가 욕은 하지 않던가요? 소리는 안나오네요?
- 김경사: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는 녹음 기능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욕을 아주 잘 하시더군요.
- 남자: 그 동안 제가 경찰관분들께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술 딱 끊겠습니다.
- 김경사: 정말이시죠? 그 결심 꼭 지켜세요
- 남자: 예, 맹세합니다. (남자 지구대에서 나간다)



- 김경사: 자, 그럼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열람 기록을 작성**해야지.

## 8.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개인정보 보호법 4장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법조항이 있습니다. 해당 법조항의 내용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 법 제2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 법 제30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법 제31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 법 제32조, 공공기관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경우에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를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법 제33조, 공공기관은 개인정보의 운용에 따른 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법 제34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대책마련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 개인정보 유출 시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34조 개인정보 유출통지 조항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법 제34조 ①]**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통지방법: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벌칙**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34조 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체없이’ 라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5일 이내를 말합니다.

알려야 할 사항으로는,

-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암호 변경 등),
-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와
-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입니다.

통지는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

사한 방법을 이용하며, 정보주체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통지 항목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이러한 사항들을 알리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1만 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 시 전문기관에 신고 [법 제34조 ③]**

-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전문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클릭
-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통지 항목을 7일 이상 게재

**벌칙**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1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피해대책과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전문기관 즉 한국정보화진흥원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체 없이’라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5일 이내를 말합니다.

만일 전자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유출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유출상황을 신고한 후,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만 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정보주체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통지 항목을 7일 이상 게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전문기관에 조치결과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 9.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에는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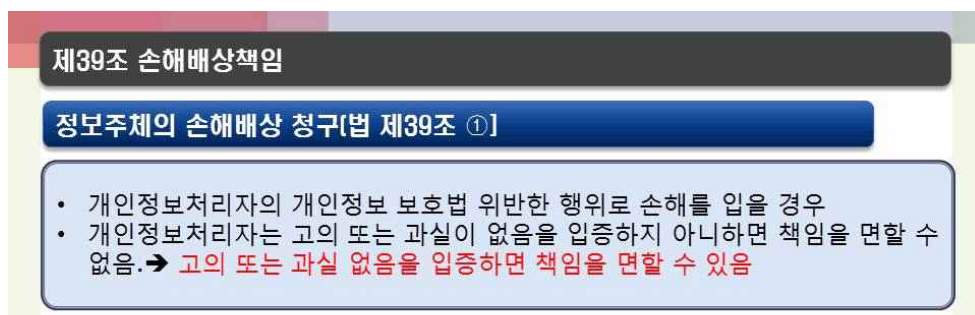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입니다.



이러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관련된 법 조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장에 있습니다.

- 법 제35조는 개인정보 열람에 대해,
- 제36조는 개인정보 정정/삭제에 대해,
- 제37조는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에 대해,
- 제38조는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
- 제39조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주체의 권리 중에서 법 제39조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제39조 제1항에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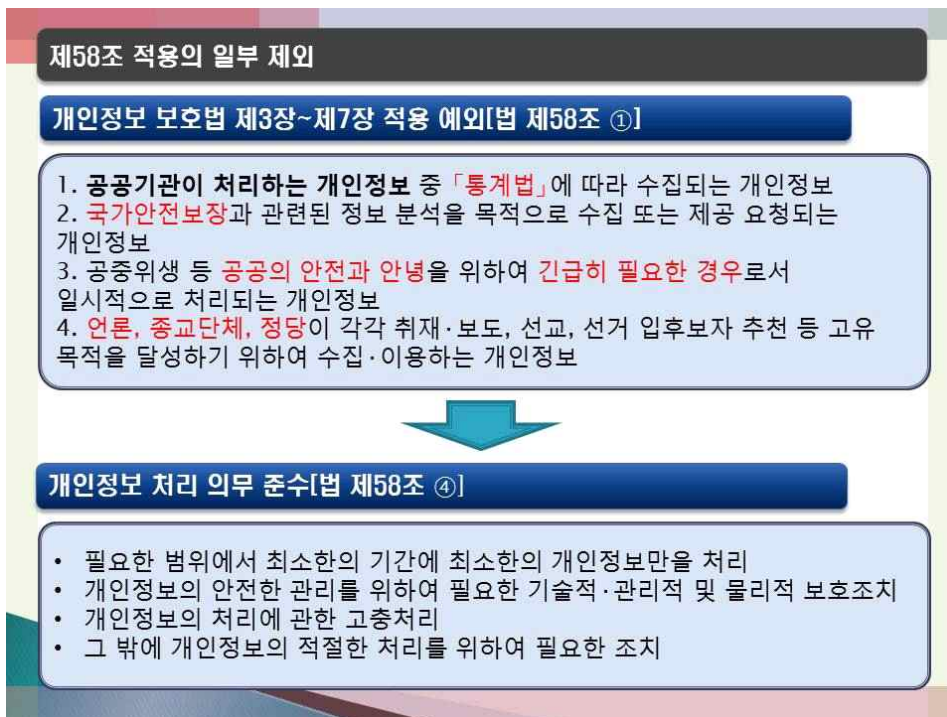
#### 손해배상책임 감경(법 제39조 ②)

-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제39조 제2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감경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가 무엇인지는 실제 손해배상 관련 재판에서 다뤄질 수 밖에 없겠습니다.

## 10. 보칙

### 가. 적용의 일부 제외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부터 제7장까지 적용하지 않는 경우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 4, 5, 6, 7 무려 5개 장이나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입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입니다.
3.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입니다. 조류독감이나, 신종플루가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경우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을 일일이 다 지킬 상황이 안될것입니다.
4.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입니다.

이런 4가지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상당 부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법 제58조 제4항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58조 적용의 일부 제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법 적용 예외[법 제58조 ②]**

- 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 법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 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 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적용 안함**

계속해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법 적용 예외 경우입니다.

법에 의해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 동의를 받는 방법, 개인정보 이전 시 정보주체에게 통보하는 것,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통보하는 것,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된 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루에서 수 만 명이 통행하는 지하철 역에 설치된 CCTV가 있습니다.

지하철 역장이 그 CCTV에 찍히는 사람들에게 “자, 여기 지하철 역 CCTV에 귀하의 모습이 찍히는 것에 동의 하시나요?” 라고 일일이 물어볼 수 없습니다.

동의를 받을 수 없으니까, 동의를 받는 방법 규정도 적용할 수 없고, CCTV에 찍힌 개인영상정보를 이전할 때 CCTV에 찍힌 사람들에게 알릴 수도 없으니 관련 조항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어도 CCTV에 찍힌 사람들에게 알릴 수 없

으니 개인정보 유출 통지 조항 적용 할 수 없으며,

CCTV에 찍힌 사람이 “CCTV에 찍힌 내 모습 삭제해 주세요” 라고 개인정보 처리 정리를 요구해도 들어 주기 매우 어려우므로 개인정보 처리정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친목도모를 위한 단체 운영 시 법 적용 예외(법 제58조 ③)

- 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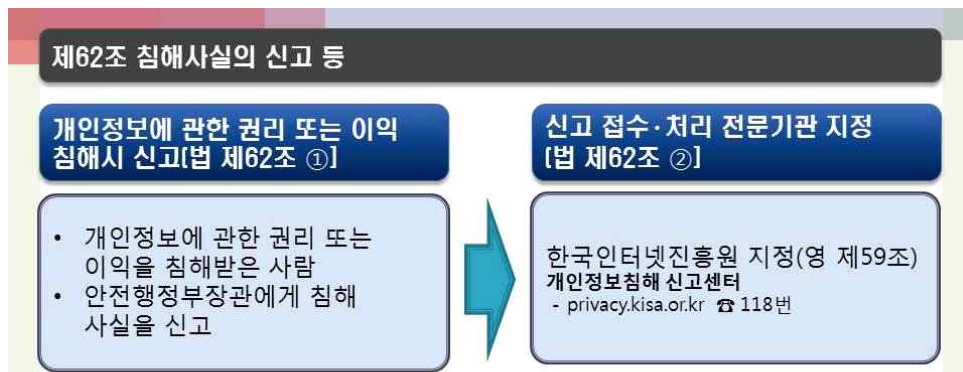
**적용 안함**

그리고, 동창회 동호회 등과 같은 친목도모를 위한 단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도 법 적용 예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어 동창회나 동호회 같은 친목단체도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대상이 되었는데, 그래서인지 “야, 그럼 동창회 회원들 연락처 모을 때 전부 다 동의 받아야 하는 거 아냐? 동의 안 받으면 처벌받는다는데?”라고 여기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친목단체에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받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세우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하다가는 친목이 오히려 깨질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창회 동호회 등과 같은 친목도모를 위한 단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있는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를 받는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공개하는 것,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는 것”을 적용하지 않는 것 입니다.

주의할 것은, 딱 이 세가지 범조항만 적용 예외이고 다른 개인정보 보호법은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 제62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부 장관은 신고 접수·처리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전문기관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문기관은 시행령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는 포털사이트에서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를 검색해서 나온 바로가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신고할 때는 무료전화인 118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미용관련 샵에 가서 미용서비스를 받는 중에 천정에 CCTV가 설치된 것을 보고 업소 사장에게 항의 했는데 사장이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반응해서 억울하다고 경찰에게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여성은 경찰에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절차에 맞기 때문에 경찰은 이 내용을 여성에게 안내 해 주면 될 것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 찾아오시는 길 | 고객센터 | RSS | KISA | YouKor | NAVER 블로그 | 국민-스톱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118

118 통시 | 1138-9501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17차동 703 17번차타워 | Tel. 02-405-5118 / Fax. 02-405-5119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65조 고발 및 징계권고****수사기관 고발[법 제65조 ①]**

- 안전행정부장관이 고발
-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의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 시

**책임자 징계 권고[법 제65조 ②]**

- 안전행정부장관이 권고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위반 행위 인정 시
-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그 소속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권고
- 권고 받은 사람은 이를 존중해야 하며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

법 제65조는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그 소속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받은 사람은 이를 존중하고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중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강좌의 ‘개인정보 보호법’ 강의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례 및 관련 소송사례, 개인정보 관련 법률, 개인정보 피해 예방에 대한 학습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3장 경찰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현황

### 제1절 개인정보 보호 활동

#### 1. 개인정보 보호 규칙·매뉴얼

##### 가.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제정 2011. 9. 29, 경찰청 예규 제441호)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경찰의 임무와 개인정보 처리절차 및 보호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목적).

제3조(개인정보보호 원칙)에서는 경찰관서에 소속하는 모든 직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규율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정 2011. 9. 29, 경찰청 예규 제441호)

**제3조(개인정보보호 원칙)** 경찰관서에 소속하는 경찰공무원 등 모든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 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6.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7.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이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의 지정·운영**에서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분야별 책임자를 누구로 지정하는 지, 수행하는 업무는 무엇인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보호지침의 수립,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규정, 처리정보의 이용·제공시 유의사항, 개인정보파일의 파기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제4장 정보주체의 권익보호**에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 침해를 신고했을 때 감찰부서에서 즉시 조사해야 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 나.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경찰청 예규 제444호, 2011. 10. 26. 시행)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치안활동을 위해 다양한 영상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경찰 조직의 특성에 맞게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절차를 규정하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의 적용대상을 경찰관서에서 공개된 장소 및 유치장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로 함(제1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시 준수사항을 규정함(제5조에서 제8조까지).
  - (1) 경찰관서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와 분야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 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대한 내부방침을 마련하여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함
- 개인영상정보의 취급시 준수사항을 규정함(제9조에서 제10조까지).
  - (1) 개인영상정보의 보유기간<sup>8)</sup>을 정하여 보유기간 경과 시 파기하도록 함
  - (2) 정보주체가 수집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확인, 열람, 삭제 등을 요구하는 경우 분야별 책임자가 지체없이 조치하도록 함
- 방법용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에서 제13조까지).
  - (1) 운영담당부서와 운영담당자를 지정하고 방법용 CCTV를 설치할 때 지방자치단체 등과 사전협의할 사항을 규정함
  - (2) 통합관제센터에 파견되는 경찰관의 역할과 임무를 명시함

8) 수사사무실, 유치장의 경우 90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유기간은 30일로 정하고 있다.

## 다. 개인정보보호 업무 매뉴얼

경찰에서는 일선 현장업무에서 사용하는 각종 업무매뉴얼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업무 매뉴얼’에는 개인정보의 개념과 관련 규정, 개인정보의 처리 단계(수집, 이용·제공, 파기)별 조치사항, 고유식별번호 및 민감정보 처리제한, 개인정보 파일의 등록·공개 등 관리,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업무와 개인영상정보 보호조치, CCTV 현황관리프로그램 등 경찰업무 수행 중 접하게 되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각종 서식을 수록하고 있다.

##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 현황

### 가. 교육기관의 교육 현황

경찰의 교육기관에는 경찰대학과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가 있다. 각 교육기관에 개설된 교육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찰대학에서는 3주간의 ‘경감 기본교육과정’에서 2시간, 5주간의 ‘경정 기본교육과정’에서 2시간 동안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4주간의 ‘치안정책과정’(총경 대상)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경찰교육원에서는 경위 이하 경찰관과 일반기능직을 대상으로 하는 1주간의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과정’에서 16시간, 2주간의 ‘경위 기본교육과정’에서 3시간, 2주간의 ‘경사 기본교육과정’에서 5시간 동안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52주간의 ‘경찰간부후보생 과정’(경위 임용)에서는 3시간, 12주간의 ‘경정 특채자 과정’에서는 3시간 동안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주간의 ‘일반직 신입 실무과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중앙경찰학교에서는 34주간의 ‘신임경찰 교육과정’에서 3시간 동안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각 교육과정별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 현황은 <표 2>에 정리하였다.

<표 2>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

교육기관	과정명(교육대상)	교육기간(교육시간), 기수당 교육인원, 연간교육기수	교육기간 중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시간
경찰대학	경감 기본교육과정	3주(109시간), 100명, 7기	2시간
	경정 기본교육과정	5주(179시간), 100명, 2기	2시간
	치안정책과정(총경)	24주(840시간), 40명, 2기	없음
경찰교육원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과정 (경위이하,일반기능직포함)	1주(35시간), 40명, 6기	16시간
	경찰간부후보생 과정	52주(1,820시간), 60명, 1기	3시간
	경정 특채자 과정	12주(420시간), 50명, 1기	3시간
	일반직 신입 실무과정	2주(70시간), 30명, 8기	없음
	경위 기본교육과정	2주(70시간), 350명, 4기	3시간
	경사 기본교육과정	2주(70시간), 420명, 5기	5시간
중앙경찰학교	신임경찰 교육과정 (순경·경장)	34주, 채용계획에 의함 <sup>9)</sup>	3시간

9) 경찰청 채용공고에 의하면 2012년에는 총 3차에 걸쳐 신입순경 1890명을 선발하였고, 2013년에는 제1차 시험에서 1452명, 2차 시험에서 426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외국어, 통신, 레이더 등 각종 특기 분야에서 신입경찰관을 소수 선발하고 있다.

## 나. 자체교육 현황

경찰청에서는 본청 및 지방청, 부속기관에서 개인정보 보호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각 교육실적을 취합한 결과를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된 2011년 9월 30일부터 12월 31일 동안 누적된 자체 교육인원은 11만 712명이었고, 2012년의 누적 교육인원은 22만 149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 사이버 강의 현황

그동안 경찰에서 사용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이버 강의 콘텐츠는 행정안전부(안전행정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다른 부처·기관에서 제작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위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경찰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강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2013년 경찰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사이버 스마트러닝 시스템 구축을 추진, 국·관 및 교육기관과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과목을 선정 하였다. 그 중 30개 과목을 제작하는 1차 사업에 ‘개인정보 보호법’ 사이버 강좌가 포함되었는데, **본 연구의 주요 일환으로서 연구자는 경찰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사이버 강좌의 제작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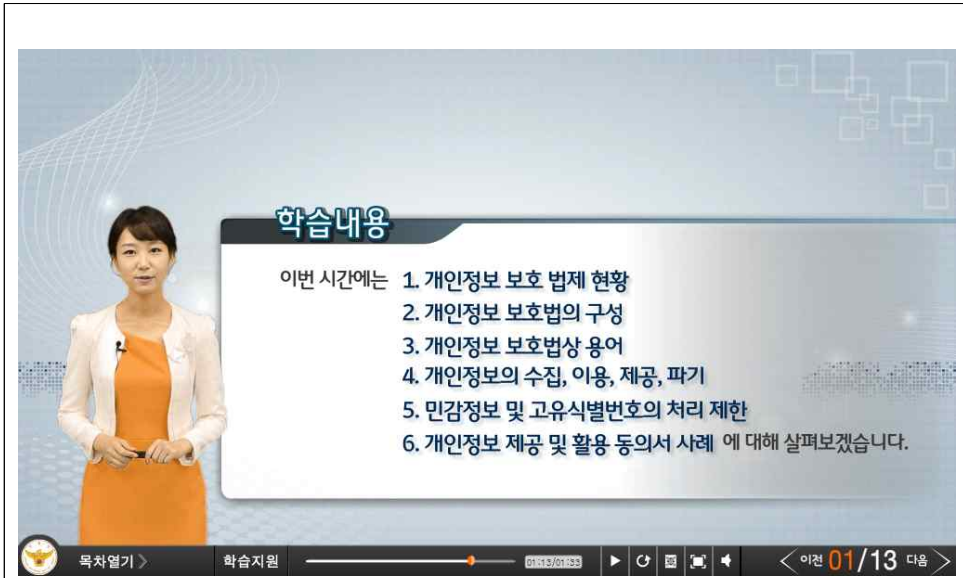
이 ‘개인정보 보호법 사이버 강좌’는 5차시로 구성되었는데, 개인정보 보호 개념에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례, 관련 소송 사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개인정보 피해 예방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의 핵심 내용과 실무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사이버 강의의 장점을 살려서 동영상, 애니메이션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돕고 강의에 대한 흥미와 학습 집중도를 높이도록 구성하였으며, 일선 실무에서 사용하는 서식도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각 차시별 주요 강의 내용은 <표 3>과 같으며, 제작된 사이버 강의 화면은 <그림 3>, <그림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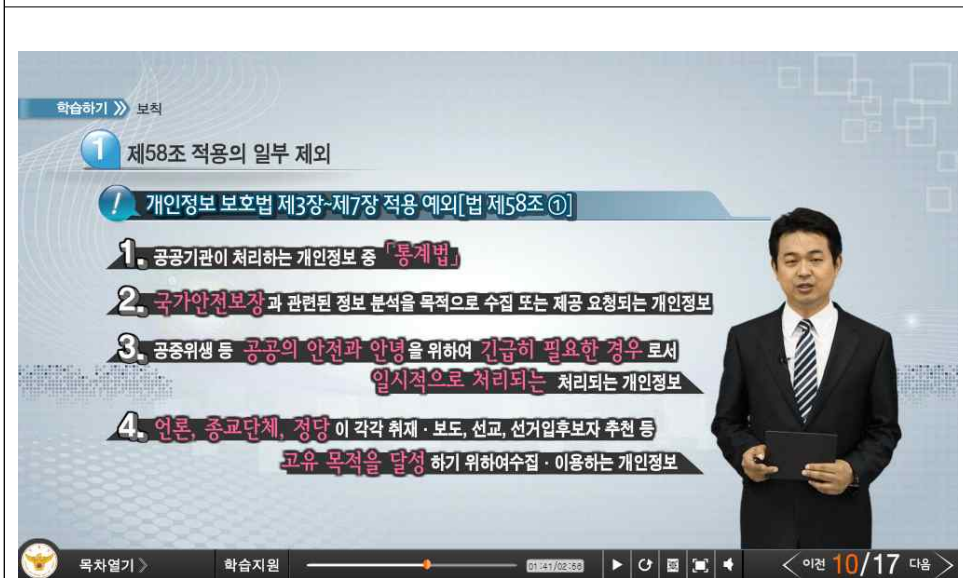
<표 3> 개인정보 보호법 사이버 강좌 내용

차시	주제	주요 내용
1차	개인정보 보호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 보호의 의미</li> <li>• 개인정보의 개념과 유형·종류</li> <li>• 개인정보의 활용</li> <li>• 학습평가</li> </ul>
2차	개인정보 유출 사례와 관련 소송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li> <li>• 민간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li> <li>• 개인정보 유출 관련 주요 소송 사례</li> <li>• 개인정보 유출 원인과 피해</li> <li>• 학습평가</li> </ul>
3차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내용(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정보 보호 법제현황</li> <li>• 개인정보 보호법 구성</li> <li>• 개인정보 보호법상 용어</li> <li>•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파기</li> <li>•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제한</li> <li>•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사례</li> <li>• 학습평가</li> </ul>
4차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내용(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상정보처리기기</li> <li>•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li> <li>• 개인정보 보호법상 적용의 일부 제외</li> <li>•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li> <li>• 학습평가</li> </ul>
5차	개인정보 피해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밀번호 만드는 방법</li> <li>• 개인정보 제공 동의 최소화</li> <li>• 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방법</li> <li>•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이트</li> <li>• 공공 I-PIN</li> <li>• 학습평가</li> </ul>

<그림 3> 개인정보 보호법 사이버 강의(1)



아나운서의 학습내용 설명



강사의 강의

<그림 4> 개인정보 보호법 사이버 강의(2)



포돌이 캐릭터를 이용한 설명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경찰 실무 설명

## 라. 개인정보 보호 교육·홍보 시스템

경찰 내부망 통합포털시스템에 있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홍보시스템은 9개의 게시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게시판의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개인정보보호 교육·홍보 시스템 게시판 구성

연번	게시판 명	용 도(게시내용)
1	공지사항	공지사항을 게시
2	언론보도 정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언론보도 게시
3	개인정보 소개	개인정보의 개념 소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홍보자료 게시
4	법과 제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지침, 가이드라인, 매뉴얼, 해설서, 법령, 고시 등 게시
5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강의자료 게시
6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용도
7	Q&A	일선 직원들의 개인정보 관련 질문에 대해 경찰청 개인정보 담당자가 답변을 해 주고 있음
8	자료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프로그램,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공문 모음, 지침 등 게시
9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를 위한 주요 정보 게시

이 시스템<sup>10)</sup>은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 직전에 개

10) 게시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시스템이라고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면이 있지만 정식

설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일부 게시판의 경우 게시판 용도과 다른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거나 자료의 최신성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3.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현황

#### 가. 개인정보 노출 점검 시스템

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개인정보 노출 점검 시스템으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있다. 개인정보 필터링 시스템과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점검 시스템은 경찰 홈페이지의 모든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스캔하며, 개인정보보호 노출진단시스템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필터링(마스킹) 하고 개인정보보호 종합관리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 노출진단시스템의 서버 상태를 확인한다.

#### 나.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경찰은 PC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에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법인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사하고 암호화 하는 프로그램을 모든 업무용 PC에 설치하고, 매월 1회 사이버안전진단의 날에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

명칭을 따라 시스템이라 부르기로 한다.

## 4. 개인정보 보호 점검 결과

### 가. 2012년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수행한 관리체계 구축과 침해예방활동 등을 진단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추진의 동기를 부여하고 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12년도에는 중앙부처 43개, 지방자치단체 16개, 지방공기업 129개 등 총 18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진단결과 경찰청은 평균 97.20점으로, 188개 기관 평균인 89.23점보다 훨씬 높았으며 중앙부처 평균 94.6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진단결과는 <표 5>, 지표별 진단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5> 2012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결과(기관별)

구 분	대상 기관	‘12년 수준진단 결과				‘11년 평균
		총 합	관리 체계	보호 대책	침해 대책	
전체 평균	188개	89.23	91.60	88.21	87.06	80.70
중앙부처	43개	94.66	95.18	96.06	92.57	94.62
지방자치단체	16개	93.90	95.21	94.95	91.10	92.23
지방공기업	129개	86.83	89.97	84.76	84.72	73.84

(출처: 행정안전부)

<표 6> 2012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결과(지표별)

분야	진단지표	종합	중앙부처	사도	지방공기업
관리체계 구축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 전담인력 구성 및 운영	99.38	99.53	99.37	99.34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예산의 책정	98.81	98.83	100	98.66
	위탁업무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활동	73.84	85.75	83.31	69.15
	개인정보보호 교육 추진	93.80	95.34	97.25	92.86
	개인정보책임자의 역할 수행	89.92	94.55	94.93	87.75
보호대책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최소화	86.72	93.53	92.80	76.78
	개인정보 파일 등록	90.11	96.83	93.87	87.24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계획 수립 및 실적	95.22	99.09	95.71	89.33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관리	91.59	95.88	97.30	89.45
침해사고 대책	개인정보 노출방지 및 자율 개선	92.13	95.51	94.43	90.72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절차 수립	86.69	93.67	90.31	83.9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기록 감사	83.09	89.39	88.87	80.27

(출처: 행정안전부)

### 나. 2012년도 경찰청 개인정보 자율점검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을 하도록 규율하고 있으며,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규칙 제9조에는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소속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2012년 6월에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이행여부를 확인하였다.

점검결과 개인정보 파일별로 담당자는 지정되어 있으나 담당자 승진 등으로 인한 인력교체가 발생, 신규 담당자의 개인정보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서식을 검토한 결과 경찰청 본청 차원에서 서식을 정해주지 않아 각 지방청·경찰서에서 서로 다른 서식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파일·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서식에 대한 일괄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검토 결과 내부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중 일부 사항이 미조치된 것이 확인되어 조치하도록 하였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검토 결과는 대부분 부서에서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제2절 경찰의 개인정보 유출

### 1.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징계 현황

2012년 8월 경찰은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형사사법포털(KICS)의 목적 외 무단조회·사적조회 및 내부정보 유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개

인정보 이용 및 관리실태'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자녀 결혼식 청첩장 발송 명목으로 지인들의 주소지를 조회하거나 공직자 재산 등록을 위해 부모의 주소지 조회, 친구 조회 등 호기심이나 개인의 필요에 의한 조회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유흥업소 유착비리와 관련, 룸살롱 황제 '이경백'에 대한 무단조회도 일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역시 호기심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sup>11)</sup>

한편, 2009년부터 2013년 5월까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파면 5명, 해임 13명, 정직 14명, 감봉 36명, 견책 38명으로 총 106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표 7>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징계 현황

(단위: 건)

연도별	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2009년	15	-	4	1	5	5
2010년	14	1	2	2	7	2
2011년	39	1	3	6	10	19
2012년	24	2	4	2	11	5
'13. 5월	14	1	-	3	3	7
계	106	5	13	14	36	38

(출처: 경찰청)

11) 박인옥, “경찰관 개인정보 무단조회는 호기심 때문”, 파이낸셜뉴스, 2012.8.7.

## 2. 개인정보 보호 위반사례

### 가. 개인정보 유출·무단조회 사례

#### ○ 경찰이 돈 받고 심부름센터에 개인정보 넘겨<sup>12)</sup>

2007년 11월, 인천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이 심부름센터 사장으로부터 “특정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조회해 알려주면 한 건당 5~7만원의 사례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해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경찰 컴퓨터 조회 단말기를 이용하여 모두 500여건의 개인정보를 심부름센터 사장에게 넘겨주고 3,000여 만원을 받았던 사건이다. 그 당시 해당 지방청에서는 범죄 예방을 위해 일선 경찰관에게 하루에 1인당 30~50건 이상 주민 및 차량 조회를 할 것을 권장하고 있었고, 그 직원은 이를 이용해서 개인정보를 유출했던 것이다.

이 사건으로 해당 직원은 2011년 5월 6일자로 파면되었고, 1심에서 징역 3년, 추징금 3335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1년 12월 9일 2심에서는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169만원을 선고받았다.

#### ○ 경찰관이 전산조회 '딸 청첩장용' 이용 물의<sup>13)</sup>

2011년 3월, 부산의 한 지구대 대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관이 자신의 딸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기 위해 2600여 명의 개인정보를 경찰 전산조회를 통해 사적으로 이용한 사례이다. 경찰 전산망 조회는 업무수행 등

12) 정재호, “심부름센터 사장에 뒷돈 받고 개인정보 유출한 경찰”, 한국일보, 2011.12.10.

13) 차근호, “경찰관이 전산조회 '딸 청첩장용' 이용 물의”, 연합뉴스, 2012.4.19.

에 한해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직원을 시켜 2개월 동안 2635건(주민조회 2622건, 면허조회 13건)을 불법적으로 조회했으며, 부하직원에게 주소인쇄 라벨지 2500장을 인쇄하도록 하는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다. 또한 경찰공무원 행동강령상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전산망을 통해 파악한 경찰협조단체 회원과 지인들 중 1000여명에게 청첩장을 보냈다. 이 사실이 결혼식 이후 소문이 나면서 부산경찰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정직3개월 징계를 받았다.

#### ○ 아내 영업위해 직원정보 몰래 열람한 경찰간부 적발<sup>14)15)</sup>

2012년 10월, 경기경찰청은 무단으로 직원들의 신원을 조회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A경감을 인사조치하고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 OO경찰서 모 지구대장 A경감은 신용카드사 영업을 하는 아내를 돕기 위해 직원들에게 신용카드 가입을 강요했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이 주소지를 허위로 적어 발급된 신용카드가 되돌아 오자 A경감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하였으며 주소지를 허위로 적은 직원들을 찾아가 야단을 쳤다. 뿐만 아니라 A경감은 자신에게 반말하는 등 하대한 직원들의 나이를 알아보겠다는 이유로 일부 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14) 이우성, “직원 개인정보 멋대로 열람 경찰간부 적발”, 연합뉴스, 2012.10.24.

15) 김태호, “경찰 간부, 아내 영업위해 직원정보 몰래 열람 들통”, 경기신문, 2012.10.24.

## 나. 개인정보 보호 소홀 사례

### ○ 경찰관 부주의로 피신고자가 신고자 인적사항 확인

2010년 10월, 경기 OO경찰서에서 시민신고 교통법규 위반자를 안내하면서 경찰관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PC화면에 띄운 채 자리를 이석하였다. 그 사이에 피신고자가 몰래 신고자 인적사항을 확인한 것인데, 개인정보 보호는 잠시도 방심하면 안된다는 것을 일깨운 사례이다.

### ○ 문서 폐기 시 부주의 사례

<그림 5>는 2009년 12월 11일 OO지방청 주차장에 경찰 문서가 담긴 마대자루와 종이박스가 쌓여있는 모습이다. 이 사진을 보도한 기사에 의하면 주민등록번호와 범죄경력 등 개인의 신상정보가 기록된 문서가 담긴 마대자루와 종이상자를 고물상에게 넘기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관리감독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문서를 입수하여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sup>16)</sup>

---

16) 김진성, “개인정보 지켜야 할 경찰이 무방비로 처리”, 부산일보, 2009.2.12.

〈그림 5〉 경찰청 주차장에 쌓여있는 경찰 문서



(출처: 부산일보)

위 사례는 2009년에 발생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을 것이라 여겨졌으나 아직도 일부 경찰관서에서는 문서 폐기 시 부주의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림 6>은 2012년 10월 광주 OO경찰서 쓰레기장에 민원인의 주민번호가 담긴 고소장, 조서, 통장사본 및 보안문서가 방치되어 있다는 기사에 나온 사진이다. 이 사진을 보도한 기사는 “노출된 개인정보 및 내부 상황이 자칫 잘못된 용처에 사용돼 제2의 범죄를 불러올 수도 있는 만큼 경찰행정사무 전반에 있어 철저하고도 체계적인 교육 및 관리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sup>17)</sup>

17) 구용희, “경찰서 쓰레기장에 나 튀구는 개인정보”, 뉴시스, 2012.10.21.

<그림 6> 경찰서 쓰레기장에 방치된 경찰문서



(출처: 뉴시스)

○ 실제 성폭행 고소장을 견본으로 제공한 사례<sup>18)</sup>

2011년 2월,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피해자가 경기 OO경찰서의 지구대를 찾아가서 경찰관에게 성폭행 사건 접수방법을 물었다. 지구대 경찰관이 “소장이 필요하다”며 여성에게 건네준 종이는 실제 고소장 사본으로, 2003년 5월 말 한 아파트 앞길에서 인근 여관으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한 여성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는 물론 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피해 여성이 성폭력을 당한 경위와 장소 등이 가려지거나 제거되지 않은 상태였다.

18) 김기성, “실제 성폭행 고소장을 견본으로…인권 팽개친 경찰”, 한겨레신문, 2011.2.16. 9쪽.

○ 방치된 치안센터…흉기·수사 정보도 방치<sup>19)</sup>

2011년 3월 8일, KBS는 방치된 치안센터에서 흉기, 최루탄이 나오고 수사관련 문서, 신분증, 신용카드 등 개인정보와 민감정보가 나뒹구는 등 경찰의 보안의식에 구멍이 뚫렸다고 보도하였다.

<그림 7> 방치된 치안센터에서 나온 신분증



(출처: KBS)

19) 황현택, “방치된 치안센터…흉기·수사 정보도 방치”, KBS 뉴스라인, 2011.3.8.

### 제3절 경찰의 개인정보 보호의식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경찰청 소속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방법은 경찰 내부망 통합포털시스템의 설문조사 기능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기간은 2013년 6월 14일부터 18일까지이고, 응답자 수는 1502명이다. 설문결과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1. 표본의 특성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근무단위는 경찰청과 지방청에 근무하는 경우가 117명(7.8%)이고,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우가 1369명(91.9%)으로 가장 많으며, 부속기관·교육기관·기타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는 16명(1.1%)로 나타났다.

근무부서에 있어서는 지구대·파출소가 포함된 생활안전이 849명(56.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수사·형사 218명(14.5%), 경비·교통 164명(10.9%), 경무 128명(8.5%), 청문·기타 73명(4.9%), 정보·보안·외사 70명(4.7%)으로 나타났다.

계급 구성에 있어서는 경정 이상이 19명(1.3%), 경감이 85명(5.7%), 경위가 624명(41.5%), 경사가 472명(31.4%), 경장이 122명(8.1%), 순경이 126명(3.6%), 기타 일반직 등이 54명(3.6%)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20대가 72명(4.8%), 30대가 297명(19.8%), 40대가 578명(38.5%), 50대 이상이 555명(37.0%)으로 나타났다.

한편, 근무하는 부서에서 서장·과장·계장·대장 등과 같은 조직의 장을

말고 있는 사람은 324명(21.6%)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1178명(78.4%)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자세한 결과 값은 <표 8>에 정리하였다.

&lt;표 8&gt;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명)	백분율(%)
근무단위	본청, 지방청	117	7.8
	경찰서	1,369	91.1
	부속기관, 교육기관, 기타	16	1.1
	총계	1,502	100.0
근무부서	경무	128	8.5
	생활안전	849	56.5
	수사/형사	218	14.5
	경비/교통	164	10.9
	정보/보안/외사	70	4.7
	청문/기타	73	4.9
	총계	1,502	100.0
계급	경정 이상	19	1.3
	경감	85	5.7
	경위	624	41.5
	경사	472	31.4
	경장	122	8.1
	순경	126	8.4
	기타(일반직 등)	54	3.6
	총계	1,502	100.0
연령	20대	72	4.8
	30대	297	19.8
	40대	578	38.5
	50대 이상	555	37.0
	총계	1,502	100.0
조직의 장	그렇다	324	21.6
	아니다	1,178	78.4
	총계	1,502	100.0

## 2. 조사결과

### 가. 인터넷 이용 중 개인정보 보호 습관

인터넷 이용 중 개인정보 보호 습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 ID 개수, 비밀번호 개수, 개인정보 유출 후 비밀번호 변경 여부, 로그아웃 습관, i-PIN 발급 여부, 사용하는 인터넷 브라우저 종류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 1) 인터넷 사이트 ID와 비밀번호 개수

이용자가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서 같은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한다면 ID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었을 때 유출된 ID와 비밀번호를 입수한 타인이 그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도 접속할 수 있으므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하는 ID나 비밀번호가 다를수록 안전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ID와 비밀번호 개수를 조사하였다.

“귀하가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ID는 몇 개입니까?” 라는 질문에 3~4개를 사용하는 사람이 520명(34.6%)으로 가장 많으며, 2개를 사용하는 사람이 337명(22.4%), 모두 같다(모든 인터넷 사이트에 1개 아이디를 사용)는 사람이 332명(22.1%), 5개 이상을 사용하는 사람이 220명(14.6%)으로 나타났고, 모두 다르다(각 인터넷 사이트마다 아이디가 다름)는 사람은 93명(6.2%)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

&lt;표 9&gt;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ID 개수

단위: 명(%)

모두 같음	2개	3~4개	5개 이상	모두 다름	전체
332(22.1)	337(22.4)	520(34.6)	220(14.6)	93(6.2)	1,502 (100.0)

“귀하가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비밀번호는 몇 개입니까?” 라는 질문에 3~4개를 사용하는 사람이 663명(44.1%)로 가장 많으며, 2개를 사용하는 사람이 403명(26.8%), 모두 같다(모든 인터넷 사이트에서 1개 비밀번호를 사용)는 사람이 174명(11.6%), 5개 이상 사용하는 사람이 158명(10.5%)이며, 모두 다르다(각 사이트마다 비밀번호가 다름)는 사람은 104명(6.9%)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lt;표 10&gt;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 비밀번호 개수

단위: 명(%)

모두 같음	2개	3~4개	5개 이상	모두 다름	전체
174(11.6)	403(26.8)	663(44.1)	158(10.5)	104(6.9)	1,502 (100.0)

한편, 위의 두 설문결과를 조합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취약한 경우 즉, ID와 비밀번호가 모두 같다고 응답한 경우를 확인한 결과 142명(9.5%)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ID와 비밀번호가 모두 다르다고 응답한 경우는 70명(4.7%)으로 나타났다.

## 2) 개인정보 유출 인지 후 비밀번호 변경 여부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는 수백만 명에서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 대부분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각자 취해야 하는데, 실제 개인정보 유출 피해 당사자가 되었을 때 비밀번호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조사해 보았다.

“귀하는 가입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알았을 때 해당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해당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변경했다는 응답자는 679명(45.2%)이고,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160명(10.7%)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입한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329명(21.9%), 해당 없음(가입한 사이트가 개인정보 유출된 적이 없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43명(16.2%)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해당 사이트에서 회원을 탈퇴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91명(6.1%)으로 나타났는데, 이 경우 회원을 탈퇴해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ID와 비밀번호가 같으면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조사결과는 <표 11>에 정리하였다.

<표 11> 개인정보 유출 인지 후 비밀번호 변경 여부

단위: 명(%)

변경함	변경안함	유출 해당없음	유출여부 모름	회원 탈퇴함	전체
679(45.2)	160(10.7)	243(16.2)	329(21.9)	91(6.1)	1,502 (100.0)

### 3) 인터넷 이용 후 로그아웃 습관

로그인(Login)은 사용자가 컴퓨터 시스템이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 사용자 인증을 통해 접속하는 것을 말하며, 로그아웃(Logout)이란 사용 중인 컴퓨터 시스템에서 접속을 끝내거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해당 사이트가 열려 있는 인터넷 브라우저 창만 종료할 경우 로그인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세션공유라고 한다.<sup>20)</sup> 만일 인터넷 사이트 이용자가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컴퓨터를 두고 자리를 떠나서 세션공유 상태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다면 그 나중에 접속한 사람은 이전에 다른 사람이 로그인한 상태를 접하게 되며,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사람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로그아웃은 인터넷 이용자의 가장 기본적인 개인정보 보호 수칙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로그아웃을 얼마나 잘 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서 로그아웃을 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905명(60.3%)이 ‘항상 로그아웃을 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336명(22.4%)이 ‘어느 정도는 한다’고 두 번째로 많이 응답하였다. 이어서 ‘거의 하지 않는다’가 201명(13.4%), ‘서비스 이용 두 번 중에 한 번 정도로 로그아웃을 한다’가 38명(2.5%), ‘전혀 하지 않는다’가 20명(1.3%) 순으로 나타났는데, 로그아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2명(0.1%)이 있었다(<표 12> 참조).

20) 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나 카드회사 사이트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일정 시간 이상 해당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으면 강제로 로그아웃을 시켜버린다.

&lt;표 12&gt; 인터넷 이용 후 로그아웃 습관

단위: 명(%)

전혀 안함	거의 안함	두 번에 한 번	어느 정도 한다	항상 한다	로그아웃을 모름	전체
20(1.3)	201(13.4)	38(2.5)	336(22.4)	905(60.3)	2(0.1)	1,502 (100.0)

### 5) 아이핀(i-PIN) 발급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2항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규율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2항에서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외 본인확인 방법에는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아이핀 등이 있는데, 아이핀은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의 약자로, 인터넷상 개인 식별번호를 의미하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글쓰기 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서비스이다.



이러한 아이핀을 얼마나 발급받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는 아이핀(i-PIN)을 발급받았습니까?”라는 질문을 한 결과 아이핀을 발급 받은 사람은 487명(32.4%)이고, 발급받지 않은 사람은 794명(52.9%)으로 과반수를 넘었다. 또한 아이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221명(14.7%)으로 나타났다(<표 13> 참조).

&lt;표 13&gt; 아이핀(i-PIN) 발급 여부

단위: 명(%)

발급받음	발급받지 않음	아이핀을 모름	전체
487(32.4)	794(52.9)	221(14.7)	1,502(100.0)

## 6) 이용하는 인터넷 브라우저 종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터넷을 한다’는 행위는 PC에서  아이핀을 눌러 실행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했던  아이핀을 가진 인터넷 브라우저 프로그램은 PC 운영체제인 Windows XP, Windows Vista, Windows 7, Windows 8을 만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Internet Explorer(이하 IE)이다. 거의 모든 PC에 IE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IE를 사용하고 있으며, IE 외에 다른 웹브라우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IE 외에도 사파리, 오페라, 파이어폭스, 크롬 등 여러 가지 웹브라우저가 있다.<sup>21)</sup>

21) 권태형, 경찰인터넷 홈페이지의 효과적인 구축·운영방안, 치안정책연구소, 2010, 14쪽.

&lt;그림 8&gt; 여러 가지 인터넷 브라우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뱅킹이나 인터넷 쇼핑, 전자민원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IE에서만 동작하는 액티브X(ActiveX)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 액티브X는 사용자의 PC에 직접 설치되는 과정에서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악성코드를 심거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 심지어 액티브X를 만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조차 IE 10에서는 액티브X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IE 이외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것은 보안을 위해서도 필요한 행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귀하가 PC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모두 선택하세요”라는 질문을 한 결과 IE를 사용하는 사람은 1483명(98.7%)으로 100%에 가까웠으며, 크롬 이용자는 95명(6.3%), 파이어폭스 이용자는 28명(1.9%), 사파리 이용자는 19명(1.3%), 오페라 이용자는 15명(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참조).

<표 14> 이용하는 인터넷 브라우저 종류  
복수응답, 단위: 명(%)

인터넷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크롬	사파리	오페라
1,483(98.7)	28(1.9)	95(6.3)	19(1.3)	15(1.0)

## 나. 개인정보 보호 교육·학습 경험

2012년부터 설문 응답일 까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교육·학습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직장집체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139명(75.8%)이었고 사이버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094명(72.8%)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학습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학습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827명(55.1%)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조사결과는 <표 15>에 정리하였다.

<표 15> 개인정보 보호 교육·학습 경험

단위: 명(%)

구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전체
직장집체교육	1,139(75.8)	363(24.2)	1,502(100.0)
사이버교육	1,094(72.8)	408(27.2)	1,502(100.0)
개인학습	827(55.1)	675(44.9)	1,502(100.0)

한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직장집체교육, 사이버교육, 개인학습 중 아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198명(13.2%)으로 나타났으며, 3가지를 모두 경험한 사람은 672명(44.7%)으로 나타났다.

## 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학습방법 선호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학습방법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학습방법 중 어느 것이 가장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669명(44.5%)이 사이버 교육을 선택하여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여주었다. 그 뒤를 이어 직장교육이 359명(23.9%), 연수교육이 256명(17.0%), 교재(자료집)을 이용한 자습이 135명(9.0%), 학습모임이 63명(4.2%), 기타 20명(1.3%)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6> 참조).

<표 16>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학습방법 선호도

단위: 명(%)

사이버교육	직장교육	연수교육	자습	학습모임	기타	전체
669(44.5)	359(23.9)	256(17.0)	135(9.0)	63(4.2)	20(1.3)	1,502 (100.0)

## 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분야별 학습 필요성 인식도

개인정보 보호의 학습 범위는 상당히 넓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학습 분야를 ‘개인정보 보호 개념’, ‘개인정보 유출사례와 관련 판례’, ‘개인정보 보호법 법령 주요내용’, 정보통신망법이나 신용정보법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 ‘개인정보 피해 예방방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개인정보 보호 관련 경찰실무(사례)’와 같이 7가지로 나누고 응답자들이 각 학습 범위에 대해 생각하는 학습 필요성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모든 분야에서 응답자의 85.0~88.9%가 학습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개인정보 피해 예방방법’에 대한 학습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경찰실무(사

례)’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자세한 조사결과는 <표 17>에 정리하였다.

<표 17>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분야별 학습 필요성 인식도

단위: 명(%)

설문내용	전혀 필요 없다	별로 필요 없다	그저 그렇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전체
‘개인정보 보호 개념’에 대한 학습 필요성	13(0.9)	67(4.5)	145(9.7)	747(49.7)	530(35.3)	1,502 (100.0)
	80(5.3)			1,277(85.0)		
‘개인정보 유출사례와 관련 판례’에 대한 학습 필요성	9(0.6)	61(4.1)	126(8.4)	729(48.5)	577(38.4)	1,502 (100.0)
	70(4.7)			1,306(87.0)		
‘개인정보 보호법 법령 주요내용’에 대한 학습 필요성	6(0.4)	45(3.0)	135(9.0)	780(51.9)	536(35.7)	1,502 (100.0)
	51(3.4)			1,316(87.6)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에 대한 학습 필요성	9(0.6)	52(3.5)	134(8.9)	792(52.7)	515(34.3)	1,502 (100.0)
	61(4.1)			1,307(87.0)		
‘개인정보 피해 예방방법’에 대한 학습 필요성	11(0.7)	44(2.9)	111(7.4)	<b>704(46.9)</b>	<b>632(42.1)</b>	1,502 (100.0)
	55(3.7)			<b>1,336(88.9)</b>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대한 학습 필요성	13(0.9)	50(3.3)	137(9.1)	755(50.3)	547(36.4)	1,502 (100.0)
	63(4.2)			1,302(86.7)		
‘개인정보 보호 관련 경찰실무(사례)’에 대한 학습 필요성	10(0.7)	49(3.3)	121(8.1)	723(48.1)	599(39.9)	1,502 (100.0)
	59(3.9)			1,322(88.0)		

## 마. 개인정보 보호법 퀴즈 결과

본 연구에서는 경찰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간단한 퀴즈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 퀴즈 1

동창회나 동호회같은 친목단체도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적용대상인가요?

- ① 적용대상이다    ② 적용대상이 아니다

정답: 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대상이 350만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적용대상에는 공공기관, 기업, 헌법기관 뿐만 아니라 친목단체도 포함된다. 이 문제는 응답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대상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1252명(83.4%)이 정답을 맞혔다.

## 퀴즈 2

동창회나 동호회 같은 친목단체도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회원들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제3항’에 의하면 친목단체는 회원의 개인정보 수집 시 회원들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문제는 응답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보칙 까지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452명(30.1%)이 정답을 맞혔다.

## 퀴즈 3

컴퓨터 파일이 아닌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는 보호대상인가요?

- ① 보호대상이다    ② 보호대상이 아니다

정답: 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따라서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파일이며 보호대상이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전의 ‘공공기

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개인정보만을 ‘개인정보파일’로 정의하였다. 이 문제는 응답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유형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1423명(94.7%)이 정답을 맞혔다.

#### 퀴즈 4

도난방지를 위해서는 대중목욕탕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나요?

- ① 설치할 수 있다 ② 설치할 수 없다

정답: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율하고 있다. 이 문제는 범죄예방을 위해서라면 장소에 관계없이 CCTV를 설치할 수 있을 거라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1266명(84.3%)이 정답을 맞혔다. 이는 곧 응답자의 15.7%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퀴즈 5

버스나 택시 내부에 설치된 CCTV는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있나요?

- ①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정답: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5항’에서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율하고 있다. 이 문제는 대중교통이 공개된 장소이며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는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1012명(67.4%)이 정답을 맞혔다.

## 퀴즈 6

경찰은 정부기관이므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나요?

① 그렇다 ② 아니다

정답: ②

개인정보 보호법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부칙까지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345명(23.0%)이 정답을 맞혔다. 이는 곧 응답자의 77.0%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6문제를 모두 맞힌 사람은 221명(14.7%) 이고, 한 문제도 맞히지 못한 사람은 3명(0.2%)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조직의 장을 맡고 있는 사람과 일반직원간에 정답률이 차이 나는지를 확인한 결과 '대중목욕탕 CCTV 설치 금지' 문제에서 일반직원은 정답률이 85.3%이고 조직의 장 정답률은 80.6%로 일반직원 정답률이 4.7%p 높았으며, '대중교통 내부 CCTV 녹음기능 사용 금지' 문제에서도 일반직원은 정답률이 68.3%이고 조직의 장 정답률은 63.9%로 일반직원 정답률이 4.4%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은 폐기된 법' 문제에서는 일반직원 정답률이 22.3%이고 조직의 장 정답률은 25.3%로 조직의 장 정답률이 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문제에서 두 집단의 정답률 차이는 1.0% 이하로 나타났다. 각 문제별 정답률은 <표 18>에 정리하였다.

&lt;표 18&gt; 개인정보 보호법 퀴즈 정답률

문제(정답)	조직의 장 (324명)		일반직원 (1178명)		전체 (1502명)	
	정답자 (명)	정답률 (%)	정답자 (명)	정답률 (%)	정답자 (명)	정답률 (%)
친목단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대상	272	84.0	980	83.2	1,252	83.4
친목단체는 회원의 개인정보 수집시 회원동의 필요없다	100	30.9	352	29.9	452	30.1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도 보호대상	305	94.1	1,118	94.9	1,423	94.7
대중목욕탕 탈의실은 CCTV 설치 금지 장소	261	80.6	1,005	85.3	1,266	84.3
대중교통 내부에 설치된 CCTV는 녹음기능 사용 금지	207	63.9	805	68.3	1,012	67.4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은 폐기된 법	82	25.3	263	22.3	345	23.0

## 바. 경찰의 개인정보 보호의식 향상에 대한 의견

설문 마지막에서는 “경찰의 개인정보 보호의식 향상을 위한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라고 하여 일선 직원들의 의견을 요청하였다.<sup>22)</sup> 일선 직원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유사한 내용으로 모아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2) 일반적인 연구보고서에는 자유의견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정도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보고서는 경찰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일선 직원들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기로 한다. 맞춤법과 띄어쓰기만 수정하였음을 밝힌다.

## 1) 교육의 필요성 강조

많은 직원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실무상 쉽고, 안일하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인데, 직원 개인마다 심각성을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 질문내용에서 언급되었기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기 학습 및 교육 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와 같은 설문 내용 또한 다시 한 번 설문 참여와 함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 **정기적인 교육**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 **정기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학습이 필요하다 생각됨
-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 **지속적인 교육**만이 개인정보보호의식을 향상시키니 싫다고 해도 시켜야합니다.
- 아직 많은 공무원들이 인식이 부족하므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업무 중에 안일하게 생각하고 처리하다가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되는 바, 꾸준히 인식을 위한 각 인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하여 내부의 소행으로 문제가 발생되므로 경찰의 개인정보 보호의식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개인정보에 대하여 경찰관들이나 모든 국민들이 별 의식이 없는듯합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반복교육**으로 의식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경찰의 개인정보보호의식은 아직도 하위수준인것 같다. 나부터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
- 개인정보보호에 너무나 무관심한 것이 사실인데 앞으로 **좀 더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지금 간단한 퀴즈를 풀면서도 긴가민가 하는게 많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거 같습니다. **교육이 필요합니다.**
- 아직까지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직원들이 모르고 있다. 사회에 이슈가 되어 **교육이 절실하다.**
- 개인정보에 대한 교육은 확실히 매우 중요하고 신상필벌에 적용되기 때문에 **수시 교**

### 육 필요함

- 개인정보보호에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는 만큼 경찰관도 이에 맞추어 **교육을 통해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교육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의식이 미흡합니다. **교육 등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 날로 지능화되어 가는 개인정보 관련 범죄에 탄력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선 우선 **관련 법에 대해 잘 알고**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함.
-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의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각종 보이콧, 스미싱 등의 사기사례들은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로부터 기인한 문제들이므로, 이러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경찰이 우선 이러한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 2) 교육방법에 대한 의견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사이버 교육과 연수(집체)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는 집체(집중)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집을 배포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공문으로 전수사항을 하달하기를 바라는 의견, 주요 사안이 있을 경우 게시판에 게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 ■ 사이버교육 필요 의견

- 정말 개인정보보호의식은 필요하고 **사이버 교육 등 반드시 실시**해야합니다. 대국민 치안봉사 활동하는 담당자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여론조사 필요 없이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 사례별 **영상 교육**이 필요하다
- 사례 등을 통한 **동영상교육**이 좋은 것 같다. 사이버 교육 중 그냥 페이지만 넘기는 교육은 효과가 없고 중간 중간 돌발퀴즈를 넣은 교육이 좋다 시간은 너무 긴 것 보

다는 30-40분으로 끊어서 부분별로 시행하는 것이 좋을 듯.

- **사이버 교육을 많이 활성화**해야한다.
- **사이버교육 시 꼭 필요하다.**
- 퀴즈를 풀다보니 개인정보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저를 보고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지식을 **사이버교육을 병행**하여 받는다면 좋을 것 같네요.

#### ■ 연수(집체)교육 필요 의견

- 경찰관들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인식이 무지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앞으로 배워야 할 과제중 제 일순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이라 생각 합니다. **연수원 등에서 1주 교육 일정으로 전 경찰관에 대하여 교육**을 시켰으면 합니다. 신임과정에 필수 과목으로 선정하여 교육을 하였으면 합니다.
- 개인정보교육은 필수이므로 **연수모임이 필수**
- **경찰학교에 입교하여 교육**을 받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개인정보보호관련 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사이버교육은 일부직원들만 듣기 때문에 **직장교육형식의 집합교육**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 최소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집체(집중)교육 필요**

#### ■ 실무위주 교육 필요 의견

-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장실습 이런 것 말입니다.
- 직장교육이나 사이버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 필요**
- 사이버교육은 형식상으로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질적인 교육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개인정보 보호 법률에 관해 모르고 있는 직원들이 매우 많다.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예를 들어 핸드폰을 가져갔다가 카톡이나 사진 등을 마음대로 보거나 지웠을 경우 절도죄 외에 어떤 법률적용이 가능한지.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실무 위주의 교육이 필요**할 듯하다.
- CCTV 자료의 활용과 관련된 **정확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사례위주의 지침서도 좋을 것 같음**
- 개인정보 보호의식 향상을 위해 **만화 등 흥미로운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교양**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요즘 개인정보가 중요시되고 법도 강력해지는 만큼 경찰관들은 개인정보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지득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된다

라는 교육보다는 적절한 예와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 ■ 개인정보 보호 관련자료 전달방법 의견

- 자료집 등을 배포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 전수사항 공문하달 요망(개인정보 보호 관련하여 경찰관으로서 알아야 될 사항 관련)
- 특별한 기간, 제목을 정하기보다는 항상 사안이 변경되거나 중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 게시물 등에 내용 등을 게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 3) 개인정보 관련 경찰업무에 대한 의견

경찰 업무 수행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피력하였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바라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의 확보·확충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관리·유출 탐지 시스템 구축과 감독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경찰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항상 취급하는 바, 근거기록을 위해 기록하는 근무일지 및 개인수첩의 경우 개인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로 인하여 수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업무자체가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다. 사소한 부분까지 개인정보보호법과 부딪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 업무에 매우 비효율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함.
- 경찰업무 특성상 개인정보 자료가 필요하고 방대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차후를 위해 계속 보관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인정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기간이 경과되면 필요시에 받으면 되지 않느냐 반문도 하겠지만 경찰 특성상 쉬운 일은 아니다 경찰에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막연한 불안함도 있지만 인력, 시간, 접촉의 한계 등 어려움이 있다. 또 상급부서에서는 가지고 있는 자료보다 더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 사건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방이 자신의 개인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를 상대방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하면 알려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이 부분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문 규정이 없음.

- 범죄예방을 위해서 **탈의실이나 화장실 등에 CCTV는 필요** 할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피해자가 될 경우 법을 바꾸고 영상을 일부분 흐리게 해서라도 반드시 운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는 누구를 막론하고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각 경찰서나 지방청에서 민간인 즉 국민을 상대로 각종 홍보나 문자전달 등을 통하여 아무에게나 할 수 없으니 개인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경우가 요즘 들어 너무 많다. 범죄와 아무연관도 없고 **단순한 경찰 홍보를 위해 지구대 파출소에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는 지시는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고 해서도 안되는 정책**이라고 판단되며 경찰홍보를 하기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정보동의를 징구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대중언론매체를 통하여 **당당히 하는 모습이 더 좋을 것이다.**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일선 직원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요구(수집)하는 경찰서, 지방청 등 상급관서에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을 지시할 때에는 반드시 **근거규정을 명시해 주셔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한 개선을 꼭 부탁드립니다.
- 여러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말고 서로 공유해서 사용**했으면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도 물론 중요하지만 너무 보안을 강조하다보니깐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는건 사실입니다. 문서 하나 열 때마다 복호화하고 다시 암호화해서 저장해야 하고, 가끔은 일하면서 짜증도 납니다. 보안기능을 강화한다고 개인정보유출을 안할까요?? 과연 얼마나 예방이 될지 의문입니다. **고의로 유출하는 직원들이 있다면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보안기능을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블루엑스레이 감찰점검, 파일 몇 개 암호화 안했다고 지적. 일선 직원들에게 냉소주의만 유발할 뿐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도 좋지만 유에스비 보안프로그램 등 때문에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 각 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 **전담 담당자 확보** 필요함
- 개인정보보호 및 CCTV 정보보호 **전문 담당자 인원확충** 절실한 실정임
-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즉시 알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개인정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통합관리**와 주요 내용 정리가 필요함
- 개인정보 보호는 부지불식간에 조용히 흘러나가는 것과 같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는 않지만 근무 중에 당연히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현실은 그게

아니다. 업무에 바쁘게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개인정보에 신경을 못 쓰게 된다. 방법은 주기적으로 주변에서 지켜봐야 한다. 자기는 모르지만 타인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 4)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낮은 의식 원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낮은 의식의 원인으로는 인력난과 직원 참여의식 저조, 기관장의 낮은 인식 수준, 형식적인 공문하달 등을 들었다.

-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이 많이 낮다고 생각됨. 이는 정보화장비부서에서 총괄하고 있으나 인력난 및 직원 참여의식 저조로 생각됨.
- 기관장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인식은 차이가 많이 다름
- 주무부서에서는 공문만 하달하면 끝,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내부 호응이 저조
- 개인정보는 꼭 필요할때 수집을 해야 하고 사용되어야 되는데 윗선에서 부터 그러한 의식 수준이 없는 것 같음. 위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의식이 깨어져 있어야 될 듯 싶은 생각임

## 제4장 경찰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 향상 방안

본 장에서는 경찰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 향상을 위한 방안을 조직적 측면과 교육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 제1절 조직적 측면

#### 1. 개인정보 보호 조직 강화 및 전문인력 확보

##### 가. 개인정보 보호 조직 강화

경찰청은 다른 기관보다 많은 개인정보와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 어느 기관보다도 개인정보 보호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하는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경찰청에서는 정보화장비기획담당관실 정보화보안계에서 3명이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중 2명은 업무지원 형식으로 차출된 인력이다. 그리고 지방청·경찰서의 경우 정보통신 인력 1명이 기존 업무와 겸업을 하고 있어 업무 집중도 및 전문성 결여로 업무추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조직 중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지만 그 중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하는 조직은 인원감축이나 현장 재배치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조직 내에서 인식하고 공감하여 개인정보

보호 조직 강화에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경찰청 정보 확보안계 내 소수인력으로 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팀’을 ‘개인정보 보호계’로 확대·강화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각 지방청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전담하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관내 경찰관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현장점검·지도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경찰서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전담하는 인력을 두어 개인정보 보호 활동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나. 개인정보 보호 법전문가 확보

일선에서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매우 다양한 사안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생각지 못한 별별 사안도 발생하고 있으며 동일한 사안임에도 경찰관서마다 서로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일선에서는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팀이나 지방청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기도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가 변호사와 같은 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법적용이나 법해석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는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이외에도 많은 개별법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정확하게 알면서 일선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안에 대해 대응할 법률전문가가 꼭 필요하다.

현재 많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변호사를 4급(4급 상당)에서 7급(7급 상당) 일반직 공무원이나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경찰에서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 50명을 경위로 채용하여 현장 경력을 쌓게 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경감으로 승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인력을 개인정보 보호 전문인력으로 활용하면 좋겠지만, 이 채

용 방안에 따른다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 경찰이 일선 근무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법률 담당으로 발령나기까지 몇 년 동안은 개인정보 보호 법률전문가가 없는 상황이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우선 먼저 변호사를 일반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경찰의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하도록 하고, 일선 근무를 마친 로스쿨 출신 경찰관을 나중에 개인정보 보호 전담 경찰관으로 발령 내는 것이 좋을 것이다.

## 2. 정책 도입 시 개인정보 보호 법령 검토

경찰청에서는 2013년 8월 1일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누적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을 감경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서 사용하는 서약서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운전면허번호를 수집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와 운전면허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고유식별번호’로 정하고 있는데 이 고유식별번호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서 규율하고 있다.

<그림 9>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서약서

[별지]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

접수번호	서울○○-2013-0801-0000	면허증 대조 확인	
<h1>서약서</h1>			
성명			
주민번호			
면허번호			
<p>상기 본인은 오늘부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p> <p>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서약자 (서명)</p>			
서약기간	. . . ~ . . .		
서약자 준수사항	<p>① 무위반 :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을 것</p> <p>② 무사고 :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p>		
성공혜택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 부여		
관련근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		
○○경찰서장 귀하			

그러나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약서에서 주민등록번호와 면허번호와 같은 고유식별번호를 기입하게 되어 있으나 정보주체에게 알리

는 사항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수집동의 내용이 없다. 이 제도를 담당하는 경찰청 교통관리국에서는 이 제도를 기획하면서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개인정보 보호 부서)와 사전 업무협의를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규칙’ 제10조를 준수하지 못한 것이다.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정 2011. 9. 29, 경찰청 예규 제441호)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①** 개인정보를 신규로 수집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문서로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이후 지체 없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문서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수집의 적법성, 영향평가 대상 여부, 행정안전부 등록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내용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치안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할 경우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전 경찰관서에 확실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개인정보 보호 부서) 및 개인정보보호담당자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분야별개인정보책임자와 취급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3. 분야별 개인정보 처리 세부 매뉴얼 제작

2012년에 경찰청에서 실시한 개인정보 자율점검에서 개인정보파일별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개인정보파일별로 담당자는 지정되어 있으나 담당자의 인사이동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존에 개인정보파일을 담당하던 직원이 나가게 되면 그 자리에 들어오는 직원이 개인정보파일 담당자로 지정은 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경찰관서에서는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파일 취급의 업무공백을 막기 위해 자세한 개인정보 처리 세부 매뉴얼을 제작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세부 매뉴얼에는 각 개인정보 파일별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파기 단계에 따라 개인정보 파일 담당자가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처음 맡게 되는 직원도 빠른 시간 내에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앞의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와 같이 새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정책시행 전 기획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처리 세부 매뉴얼을 제작하여 신규 정책 추진 시 발생하는 혼란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4. 민원서식 현행화

2013년 6월 21일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2012년 4월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 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해당 법령을 개정해 시행 중으로, 156종

의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없어졌고 그 중 경찰청 소관 문서는 총 29개가 바뀌었지만 1년이 넘도록 경찰청·지방청 홈페이지에서 바뀐 서식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어느 기관보다 국민의 인권을 중시해야 할 경찰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서류 서식 제도 개선에 역행한다는 비난마저 제기된다고 보도하였다.<sup>23)</sup>

이는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서와 해당 민원 서식을 담당하는 부서간의 업무처리 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민원서류를 담당하는 각 부서에서 민원서식 변경 시 즉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서에 통보하여 서식을 교체하는 업무프로세스가 확립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부 지방청 홈페이지의 경우 자체 홈페이지에 민원서식을 제공하는 메뉴를 두고 있는데,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에서 민원서식을 제공하는 경우 자체 메뉴를 두는 것 보다는 신고민원포털([cyber112.police.go.kr](http://cyber112.police.go.kr))의 민원서식 메뉴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다.

---

23) 오현태, “인권 중시해야 할 경찰이 개인정보 보호는 외면”, 세계일보, 2013. 6. 21. 8쪽.

<그림 10> 신고민원포털의 민원서식 제공

The screenshot shows the '신고민원포털' (Report and Petition Portal)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header includes the agency's name and the slogan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하겠습니다.' (We will work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eople's eyes). The main navigation bar contains '신고' (Report), '제보' (Tip-off), '수사민원 / 조희' (Investigation Petition / Jo-hee), '민원' (Petition), and '교통' (Traffic). The left sidebar lists '민원' (Petition) with sub-items like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Ask anything), '민원서식' (Petition Forms), '각종인허가' (Various Permits), and '유실물출력페이지' (Lost Item Output Page).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민원서식' and features a message: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민원서식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You can download the petition forms provid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Below this, there are tabs for '교통' (Traffic), '경무' (Police), '수사' (Investigation), '생활안전' (Life Safety), '경비' (Security), '정보' (Information), '의사' (Medical), and '감사' (Complaint). A list of 10 forms is displayed, each with a 'Download' button:

번호	신청서명	기능
01	교통사고이의 신청서	Download
02	긴급자동차 신청서	Download
03	긴급자동차 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Download
04	버스전용차로 통행지정 신청서	Download
05	버스전용차로 통행지정증 재교부 신청서	Download
06	제한구역통행증 신청서	Download
07	행정심판 청구서	Download
08	도로공사 신고서	Download
09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서	Download
10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Download

## 제2절 교육적 측면

경찰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다. 설문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대부분의 직원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많은 직원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교육적 측면에서의 경찰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 향상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 1.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교육 강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 과목이 차지하는 시간은 경찰교육원의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과정’ (16시간)을 제외하면 2시간~5시간에 불과하다. 24주 동안의 치안정책과정(총경대상)과 2주 동안의 일반직 신입 실무과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시간이 아예 없는 상황이다. 또한 경찰간부후보생 과정은 52주(1820시간), 신입경찰 교육과정(순경·경장)은 34주 교육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 교육시간이 3시간에 불과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에 비해 교육시간이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경찰 교육분야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겠지만, 전체 교육시간 중 체육활동이나 일반교양 시간을 줄여서라도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시간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교육시간이 없는 일반직 신입과정과 치안정책과정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시간을 개설해야 한다. 특히 지휘관·부서장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수준은

그 경찰관서·부서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 수준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휘관·부서장급인 총경·경정·경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사이버 교육 강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학습방법 선호도 조사 결과에서 응답자 44.5%가 사이버교육이 가장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이버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강의는 경찰을 위한 첫 번째 개인정보 보호 강의인 관계로 개인정보 개념, 사례, 법령, 피해 예방 등 개인정보 보호의 전반적인 분야를 다루었다. 이후 심화과정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고 실무적인 내용을 다루는 사이버 강의 제작이 필요하다. 또한, 과목의 특성상 법령 개정 및 새로운 판례, 사례가 나올 경우 강의를 수정·보완해야 할 필요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바, 사이버 강의 제작업체와 계약 시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스마트폰·태블릿PC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이용해서도 학습할 수 있도록 사이버 강의를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용자가 경찰청 사이버 강의 시스템에 접속했을 때 개인정보 보호 과목이 이용자에게 잘 보일 수 있도록 메인 페이지에 노출시켜 이용자의 강의 이용을 높이도록 조치해야 한다.

### 3. 교육·홍보 콘텐츠 개발

#### 가. 실무를 다룬 플래시 애니메이션 제작

설문조사 결과 일선 직원들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더 많은 교육 콘텐츠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 단순히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교육 보다는 구체적이고 적절한 실무 위주, 사례 위주의 교육 콘텐츠를 만화나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자연스럽게 학습이 되는 교육콘텐츠를 원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로 제작한 일선 지구대에서의 CCTV 운영 관련 플래시 애니메이션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으며, 이를 시청한 일선 지구대·파출소장은 사례를 다룬 짧은 애니메이션을 통해 본인이 몰랐던 부분과 앞으로 본인이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되었다는 반응이었다.

플래시 애니메이션은 비교적 저비용으로 제작이 가능하여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높은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제작하여 일선에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재를 계속 발굴해 나가야 하며, 이를 적절한 상황극으로 꾸밀 수 있는 작가적 역량이 뛰어난 경찰 조직내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나. 개인정보 보호 소식지 제작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치안정책 연구 요약, 국내외 치안정책 동향, 일선 현장 직원의 의견 등을 담은 치안정책리뷰를 격월로 발간하여 일선에 배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각종 소식을 전하는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제작하여 내부망 통합포털시스템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하고 공문형식으로도 하달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식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발간 주체는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인 정보화장비정책관으로 하고,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팀과 경찰교육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담당 교수·강사, 전국 지방청의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들이 편집과 원고작성을 맡는다면 격월간 발간 정도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PDF 형식으로 배포하면 인쇄발간비도 들지 않기 때문에 예산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 다. 개인정보 보호 사례집 정기 제작·배포

현재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팀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FAQ를 문서로 제작하여 개인정보 교육·홍보 시스템의 Q&A 게시판에 올려놓고 있는데, 이 FAQ는 2013년 1월에 처음 만들어 진 이후 약간의 내용이 수정된 버전 이후로 추가로 나오고 있지 않다.

그동안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팀에 접수된 질문과 함께 각 지방청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접수된 질문들을 취합, 정리하여 개인정보 보호 사례집을 정기적으로 제작해서 일선에 배포하면 중복된 질문이 줄어들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르게 해석하거나 처리하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I. 국내문헌

#### 1. 단행본

권태형, 경찰인터넷 홈페이지의 효과적인 구축·운영방안, 치안정책연구소, 2010.

국가정보원·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 2013 국가정보보호백서, 2013.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2013.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2011.

#### 2. 기타

구용희, "경찰서 쓰레기장에 나뒹구는 개인정보", 뉴시스, 2012.10.21.

경찰청, 개인정보보호 업무 매뉴얼.

김기성, "실제 성폭행 고소장을 견본으로...인권 팽개친 경찰", 한겨레신문, 2011.2.16.

김진성, "개인정보 지켜야 할 경찰이 무방비로 처리", 부산일보, 2009.2.12.

김태호, "경찰 간부, 아내 영업위해 직원정보 몰래 열람 들통", 경기신문,

2012.10.24.

박인옥, "경찰관 개인정보 무단조회는 호기심 때문", 파이낸셜뉴스, 2012.8.7.

방송통신위원회, 유무선 통신서비스 가입자 통계, 2013.3.

오현태, "인권 중시해야 할 경찰이 개인정보 보호는 외면", 세계일보, 2013.6.21.

이우성, "직원 개인정보 멋대로 열람 경찰간부 적발", 연합뉴스, 2012.10.24.

인터넷통계정보 검색시스템(isis.kisa.or.kr).

정재호, "심부름센터 사장에 뒷돈 받고 개인정보 유출한 경찰", 한국일보, 2011.12.10.

차근호, "경찰관이 전산조회 '딸 청첩장용' 이용 물의", 연합뉴스, 2012.4.19.

황현택, "방치된 치안센터...흥기·수사 정보도 방치", KBS 뉴스라인, 2011.3.8.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011.12.

## II. 기타

도움주신분(가나다 순)

강길범 경감, 경찰청.

강달천 사무국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구유진 경감, 경찰청.

권신주 경위, 경찰대학.

박민경, 국가인권위원회.

장홍익 경감, 경찰대학.

전장현 경위, 중앙경찰학교.

정원우 경위, 경찰청.

조기연 경정, 경찰청.

조은순 경정, 분당경찰서.

지연일 전산서기, 경찰청.

최영 경감, 경찰교육원.

책임연구보고서 2013-04

## 경찰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 향상에 관한 연구

---

---

2013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 치안정책연구소장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남로 74

홈페이지 : [www.psi.go.kr](http://www.psi.go.kr)

---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